

2025년 오산시 소하천정비종합계획 재수립
약 식 전 략 환 경 영 향 평 가
- 평가항목·범위 등의 결정내용 -

2026. 04



오 산 시

목 차

제 1 장 계획의 목적 및 개요

1.1 계획의 배경 및 목적	1
1.2 약식전략환경영향평가 실시근거	1
1.3 계획의 추진경위 및 향후 계획	3
1.4 계획의 내용	3

제 2 장 평가항목·범위 등의 결정내용

2.1 환경보전목표 설정	6
2.2 약식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	7
2.3 평가항목의 설정	24
2.4 항목별 평가대상지역의 설정	26
2.5 평가범위 및 방법 설정	27

제 3 장 대안의 설정

3.1 계획비교에 따른 대안검토	28
3.2 수단·방법에 따른 대안검토	29

제 4 장 주민 등에 대한 의견 수렴계획

4.1 평가 항목 등의 결정내용 공개	33
4.2 약식전략환경영향평가 주민의견 수렴	33

제 5 장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심의결과

5.1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실시근거	36
5.2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심의 개요	36
5.3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심의의견	37

제 1 장 계획의 목적 및 개요

1.1 계획의 배경 및 목적

1.1.1 소하천정비종합계획

- 경기도 오산시 관내 소하천의 기상이변에 따른 국지성 호우 등으로 인한 하도 및 수리
· 수문 특성변화와 소하천의 관리운영의 미비점 보완이 부각됨에 따라 「소하천 정비법」 제6조 및 동법시행령 제4조 규정에 의거 소하천으로 지정된 오산시 관내 15개 소하천에 대하여 소하천의 관리, 이용, 개발, 치수경제 및 수질보전 등에 관련된 사항을 종합적으로 체계있게 조사·분석하여 당해 소하천에 대한 종합계획을 수립, 향후 소하천 정비의 방향이 되는 지침으로 활용함에 그 목적이 있음

1.1.2 소하천대장 작성

- 하천자산의 효율적인 유지관리를 위하여 소하천정비법 제9조의 규정에 의거 소하천 구간에 대한 소하천 현황, 수리현황의 보전 및 이용실태를 종합적으로 조사·분석, 대장화하여 체계적이고 일관된 관리를 도모하고 하천사용의 이익증진을 위해 기본 자료를 제공코자 함

1.1.3 지형도면 고시

-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용도지역·지구 등으로 결정 또는 지정된 사항을 지적이 표시된 지형도면으로 고시하고자 함

1.2 약식전략환경영향평가(재협의) 실시근거

가. 약식전략환경영향평가 실시근거

- 본 계획은 「소하천정비법」에 따른 소하천정비종합계획으로서 「환경영향평가법」 제9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 [별표 2]에 의거하여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계획에 해당됨
- 또한, 「환경영향평가법」 제11조의2 및 같은법 시행령 제10조의2 [별표 2의2]에 의거하여 약식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계획에 해당됨

〈표 1.2-1〉 전략환경영향평가 실시근거

구 분	개발기본계획의 종류	협의 요청시기
2. 개발기본계획		
다. 하천의 이용 및 개발	1) 「소하천정비법」 제6조에 따른 소하천정비종합계획	「소하천정비법」 제6조제4항에 따라 관리청이 지방환경관서의 장 등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는 때

자료 :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별표 2]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계획 및 협의 요청시기

〈표 1.2-2〉 약식전략환경영향평가 실시근거

구 분	개발기본계획의 종류	협의 요청시기
2. 개발기본계획		
다. 하천의 이용 및 개발	1) 「소하천정비법」 제6조에 따른 소하천정비종합계획	1) 「소하천정비법」 제6조제4항에 따라 관리청이 지방환경관서의 장 등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는 때

자료 :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별표 2의2] 약식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계획 및 협의요청 시기

나. 기후변화영향평가 미실시 근거

- 본 계획은 소하천 정비종합계획으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에 따른 기후변화영향평가 대상계획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검토됨

〈표 1.2-3〉 기후변화영향평가 관련 규정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제23조(기후변화영향평가)	
① 관계 행정기관의 장 또는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대상 사업의 사업계획을 수립하거나 시행하는 사업자는 같은 법 제9조·제22조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 또는 환경영향평가의 대상이 되는 계획 및 개발사업 중 온실가스를 다량으로 배출하는 사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계획 및 개발사업에 대하여는 전략환경영향평가 또는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할 때, 소관 정책 또는 개발사업이 기후변화에 미치는 영향이나 기후변화로 인하여 받게 되는 영향에 대한 분석·평가(이하 “기후변화영향평가”라 한다)를 포함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표 1.2-4〉 기후변화영향평가 대상계획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 개발기본계획 중 기후변화영향평가 대상계획	
구분	기후변화영향평가 대상 개발기본계획의 종류
바. 하천의 이용 및 개발	•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별표 2 제2호자목(하천의 길이가 20km 이상인 경우만 해당한다)

자료 :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 [별표 2]

1.3 계획의 추진경위 및 향후 계획

가. 추진경위

- 2025.03. : 2025년 오산시 소하천정비종합계획 재수립 설계 착수
- 2025.05. : 소하천 시·중점 현장조사
- 2025.07. : 소하천 현황 측량
- 2025.11. : 1차자문(홍수량 및 시·중점) 심의
- 2025.11. : 2025년 오산시 소하천정비종합계획 재수립 전략환경영향평가 착수
- 2026.04. : 약식환경영향평가협의회 구성 및 심의

나. 향후 계획

- 2026.05. : 약식전략환경영향평가 항목 등의 결정내용공개
- 2026.06. : 생태계조사 및 1차 환경질 조사
- 2026.09. : 2차 환경질 조사
- 2026.12. : 약식전략환경영향평가서 협의기관 제출 및 협의
- 2026.12. : 약식전략환경영향평가서 주민의견 수렴 및 관계기관 검토

1.4 계획의 내용

가. 계 획 명 : 2025년 오산시 소하천정비종합계획 재수립

나. 위 치 : 경기도 오산시 일원

다. 규 모 : 소하천 15개소, 연장 16.465km → 15.896km

라. 목 표 년 도 : 2027년

마. 계획시행자 : 오산시

바. 승 인 기 관 : 오산시

사. 계획의 개요

1) 총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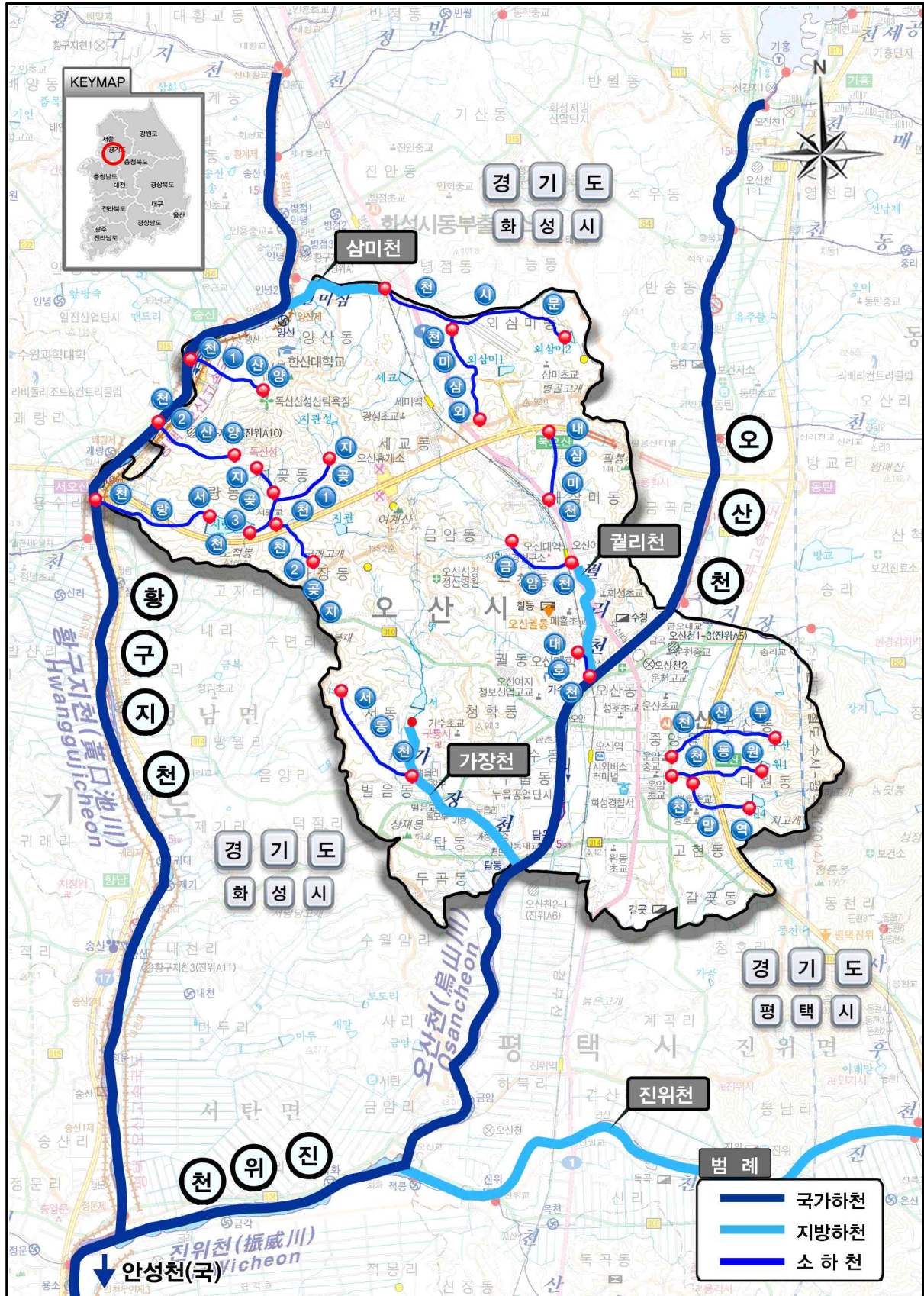
〈표 1.4-1〉 총괄

발 주		조정		증감		비고
개소수	연장(km)	개소수	연장(km)	개소수	연장(km)	
15	16.465	15	15.896	-	-0.569	-

2) 계획소하천 현황 및 규모(변경)

〈표 1.4-2〉 계획 소하천 현황

번호	수계	소하천명	과 업 구 간				과업 연장 (km)	비 고
			시 점		종 점			
1	오산천	금암천	기수립 : 금암동 236-14 금 회 : 금암동 236-14	기수립 : 수청동 282-14 금 회 : 수청동 282-14		0.657 0.657		
2	〃	대호천	기수립 : 궤동 575-10 금 회 : 궤동 575-10	기수립 : 궤동 578 금 회 : 궤동 578		0.376 0.376		
3	〃	부산천	기수립 : 부산동 764 금 회 : 부산동 764-15	기수립 : 원동 160-2 금 회 : 원동 160-2		1.465 1.450		
4	〃	원동천	기수립 : 원동 729-2 금 회 : 원동 729-62	기수립 : 원동 729-11 금 회 : 원동 729-11		1.173 1.173		
5	〃	역말천	기수립 : 원동 706-4 금 회 : 원동 706-4	기수립 : 원동 121-6 금 회 : 원동 121-6		1.112 1.104		
6	〃	서동천	기수립 : 서동 549 금 회 : 서동 549	기수립 : 서동 637-4 금 회 : 서동 637-5		1.061 1.100		
7	황구지천	문시천	기수립 : 외삼미동 609 금 회 : 외삼미동 70-2	기수립 : 양산동 5 금 회 : 세교동 568-12		2.872 2.666		
8	〃	외삼미천	기수립 : 외삼미동 545-21 금 회 : 외삼미동 545-21	기수립 : 외삼미동 492-6 금 회 : 외삼미동 492-6		0.811 0.811		
9	〃	양산1천	기수립 : 양산동 산19-3 금 회 : 양산동 산19-3	기수립 : 양산동 490-119 금 회 : 양산동 515-1		1.000 0.988		
10	〃	양산2천	기수립 : 양산동 662 금 회 : 양산동 631	기수립 : 양산동 662-3 금 회 : 양산동 528-11		0.700 0.690		
11	〃	서랑천	기수립 : 서랑동 산23-2 금 회 : 서랑동 산23-3	기수립 : 서랑동 289-20 금 회 : 서랑동 374-46		1.487 1.400		
12	〃	지곶1천	기수립 : 지곶동 534-10 금 회 : 지곶동 534-81	기수립 : 지곶동 534-1 금 회 : 지곶동 534-1		1.649 1.410		
13	〃	지곶2천	기수립 : 지곶동 534-26 금 회 : 지곶동 534-26	기수립 : 지곶동 387-6 금 회 : 지곶동 387-6		0.714 0.699		
14	〃	지곶3천	기수립 : 지곶동 534-21 금 회 : 지곶동 534-23	기수립 : 지곶동 534-17 금 회 : 지곶동 534-83		0.549 0.545		
15	오산천	내삼미천	기수립 : 내삼미동 704-3 금 회 : 내삼미동 704-1	기수립 : 내삼미동 708-8 금 회 : 내삼미동 708-8		0.839 0.827		
계			총 15개소		기수립 : 금 회 :	16.465 15.896		



(그림 1.4-1) 계획 소하천 현황도

제 2 장 평가항목·범위 등의 결정내용

2.1 환경보전목표 설정

- 본 계획은 구체적인 개발계획이 아닌 오산시 관내 소하천들의 정비·관리방안을 제시하는 소하천정비종합계획으로서 환경보전목표를 다음과 같이 설정함

〈표 2.1-1〉 평가 항목별 환경보전목표 설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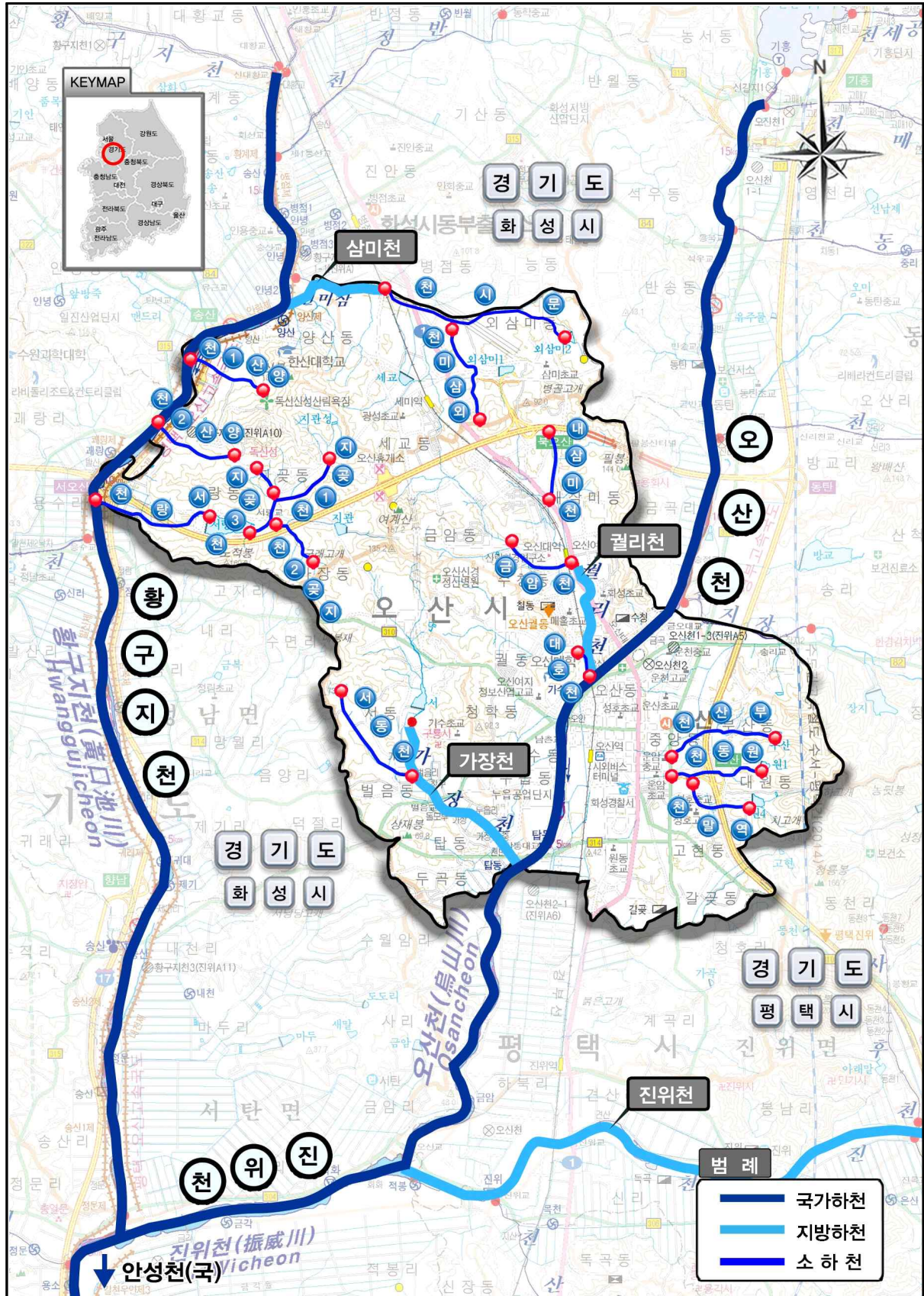
평가항목	환경보전목표 및 사유
1. 계획의 적정성	
가. 상위 계획 및 관련계획과의 연계성	• 상위 계획 및 관련 계획에 부합한 계획 수립
나. 대안설정·분석의 적정성	• 대안비교(계획비교, 수단·방법)를 통한 최적의 계획 수립
2. 입지의 타당성	
가. 자연환경의 보전	
1) 생물다양성·서식지 보전	
가) 동·식물상	• 법정보호종 및 보호가치가 있는 생물종의 서식지 훼손 최소화
나) 자연환경자산	• 자연환경자산의 훼손 최소화
2) 지형 및 생태축 보전	• 특이지형, 보존가치가 있는 지형·지질 및 생태축 훼손 최소화
3) 자연경관의 보전	• 주변 자연환경과 조화로운 경관 유지
4) 수환경의 보전	• 환경기준에 따른 수질 등급 유지 • 수질오염총량관리제 지역개발부하량 이내 개발
나. 생활환경의 안정성	
1) 환경기준 부합성	
가) 기 상	• 기상에 미치는 영향 최소화
나) 대기질	• 대기질 환경기준 준수
다) 온실가스	• 온실가스 발생 최소화
라) 토 양	• 토양오염우려기준 준수
마) 소음·진동	• 소음·진동 환경기준 준수
2) 환경기초시설의 적정성	• 환경기초시설의 수용용량 유지
3) 자원·에너지 순환의 효율성	• 폐기물 발생 억제 및 자원의 재이용
다. 사회·경제 환경과의 조화성	
1) 환경친화적 토지이용	• 환경친화적 토지이용계획 수립

2.2 약식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

- 본 계획은 오산시 관내 소하천들의 정비·관리방안을 제시하는 소하천정비종합계획으로
계획소하천은 15개소이며, 총 하천연장은 15.896km임

〈표 2.2-1〉 계획소하천 현황

번호	수계	소하천명	과 업 구 간				과업 연장 (km)	비 고
			시 점		종 점			
1	오산천	금암천	기수립 : 금 회 :	금암동 236-14 금암동 236-14	기수립 : 금 회 :	수청동 282-14 수청동 282-14	0.657 0.657	
2	〃	대호천	기수립 : 금 회 :	궤동 575-10 궤동 575-10	기수립 : 금 회 :	궤동 578 궤동 578	0.376 0.376	
3	〃	부산천	기수립 : 금 회 :	부산동 764 부산동 764-15	기수립 : 금 회 :	원동 160-2 원동 160-2	1.465 1.450	
4	〃	원동천	기수립 : 금 회 :	원동 729-2 원동 729-62	기수립 : 금 회 :	원동 729-11 원동 729-11	1.173 1.173	
5	〃	역말천	기수립 : 금 회 :	원동 706-4 원동 706-4	기수립 : 금 회 :	원동 121-6 원동 121-6	1.112 1.104	
6	〃	서동천	기수립 : 금 회 :	서동 549 서동 549	기수립 : 금 회 :	서동 637-4 서동 637-5	1.061 1.100	
7	황구지천	문시천	기수립 : 금 회 :	외삼미동 609 외삼미동 70-2	기수립 : 금 회 :	양산동 5 세교동 568-12	2.872 2.666	
8	〃	외삼미천	기수립 : 금 회 :	외삼미동 545-21 외삼미동 545-21	기수립 : 금 회 :	외삼미동 492-6 외삼미동 492-6	0.811 0.811	
9	〃	양산1천	기수립 : 금 회 :	양산동 산19-3 양산동 산19-3	기수립 : 금 회 :	양산동 490-119 양산동 515-1	1.000 0.988	
10	〃	양산2천	기수립 : 금 회 :	양산동 662 양산동 631	기수립 : 금 회 :	양산동 662-3 양산동 528-11	0.700 0.690	
11	〃	서랑천	기수립 : 금 회 :	서랑동 산23-2 서랑동 산23-3	기수립 : 금 회 :	서랑동 289-20 서랑동 374-46	1.487 1.400	
12	〃	지곶1천	기수립 : 금 회 :	지곶동 534-10 지곶동 534-81	기수립 : 금 회 :	지곶동 534-1 지곶동 534-1	1.649 1.410	
13	〃	지곶2천	기수립 : 금 회 :	지곶동 534-26 지곶동 534-26	기수립 : 금 회 :	지곶동 387-6 지곶동 387-6	0.714 0.699	
14	〃	지곶3천	기수립 : 금 회 :	지곶동 534-21 지곶동 534-23	기수립 : 금 회 :	지곶동 534-17 지곶동 534-83	0.549 0.545	
15	오산천	내삼미천	기수립 : 금 회 :	내삼미동 704-3 내삼미동 704-1	기수립 : 금 회 :	내삼미동 708-8 내삼미동 708-8	0.839 0.827	
계			총 15개소		기수립 : 금 회 :	16.465 15.896		



(그림 2.2-1) 약식전략환경영향평가 계획소하천

〈표 2.2-2〉 대상 소하천별 현황(금암천)

소하천명	금암천	유역면적 (km ²)	3.04	소하천연장 (km)	0.657	유로연장 (km)	2.98
분 류	궤리천	위 치	시점		종점		
			금암동 236-14		수청동 282-14		
소하천 개 황	■ 소하천 수계망 : 안성천 ⇐ 진위천 ⇐ 오산천 ⇐ 궤리천 ⇐ 금암천						
하 천 현 황	■ 금암천은 지방하천 궤리천으로 유입되는 하천임. ■ 하천인근 오산세교1지구, 지하철 1호선 등이 위치하며, 소하천 전구간 물향기수목원 내에 위치하고 있음. ■ 하류부는 도로(청학로)를 횡단하며, 수청저류지를 통해 궤리천으로 합류됨. ■ 물향기수목원의 식재, 조경 등 현황에 맞춰 대부분 완성제방으로 호안(자연형) 및 독마루 상태 양호함.						
							
현 장 사 진							
상류부(과업시점)		중류부		하류부(과업종점)			
							

<표 계속> 대상 소하천별 현황(대호천)

소하천명	대호천	유역면적 (km ²)	1.88	과업연장 (km)	0.376	유로연장 (km)	3.00
분 류	오산천	위 치	시점		종점		
			결동 575-10		결동 578		
소하천 개 황	■ 소하천 수계망 : 안성천 ← 진위천 ← 오산천 ← 대호천						
하 천 현 황	■ 대호천은 국가하천 오산천으로 유입되는 하천임. ■ 상류부는 도시개발로 복개구간이 형성되어 있음. ■ 중류부 좌안은 지하천 1호선 위치, 우안은 주거지 및 상업시설 위치 ■ 하류 중점부에 배수문이 위치하여 국가하천 오산천으로 유입 ■ 대호천 전구간 완성제방으로 호안 및 둑마루 상태 양호						
							
현 장 사 진							
상류부(과업시점)		중류부			하류부(과업종점)		
							

〈표 계속〉 대상 소하천별 현황(부산천)

소하천명	부산천	유역면적 (km ²)	0.92	과업연장 (km)	1.450	유로연장 (km)	2.22
분 류	오산천	위 치	시점		종점		
			부산동 764-15		원동 160-2		
소하천 개 황	■ 소하천 수계망 : 안성천 ⇐ 진위천 ⇐ 오산천 ⇐ 지하관로 ⇐ 부산천						
하 천 현 황	■ 부산천은 도심지 지하관로에 유입하여 국가하천 오산천으로 유입되는 하천임. ■ 상류부는 아파트단지 개발로 소하천 정비가 완료되었음. ■ 중류부는 복개구간으로 경부고속도로를 수로암거로 관통하여 흐르고 있음. ■ 하류부는 농경지로 이루어져 있으며 지하관로를 통해 오산천으로 유입됨. ■ 하류부 농경지 구간은 「운암뜰 AI시티 도시개발사업」이 계획되어 있음.						
							
현 장 사 진							
상류부(과업시점)		중류부			하류부(과업종점)		
							

<표 계속> 대상 소하천별 현황(원동천)

소하천명	원동천	유역면적 (km ²)	2.11	과업연장 (km)	1.173	유로연장 (km)	2.38
분 류	오산천	위 치	시점		종점		
			원동 729-62		원동 729-11		
소하천 개 황	■ 소하천 수계망 : 안성천 ⇐ 진위천 ⇐ 오산천 ⇐ 지하관로 ⇐ 원동천						
하 천 현 황	■ 원동천은 도심지 지하관로에 유입하여 국가하천 오산천으로 유입되는 하천임.						
	■ 상류부는 원동저수지 및 농경지가 위치함.						
	■ 중류부는 복개구간으로 경부고속도로를 수로암거로 관통하여 흐르고 있음.						
	■ 하류부는 공장 및 오산TG가 위치하며 지하관로에 유입됨.						
	■ 제방사면은 급경사 석축으로 이루어짐.						



현 장 사 진



〈표 계속〉 대상 소하천별 현황(역말천)

소하천명	역말천	유역면적 (km ²)	1.21	과업연장 (km)	1.104	유로연장 (km)	2.21
분 류	오산천	위 치	시점		종점		
			원동 706-4		원동 121-6		
소하천 개 황	■ 소하천 수계망 : 안성천 ≡ 진위천 ≡ 오산천 ≡ 지하관로 ≡ 원동천 ≡ 역말천						
하 천 현 황	■ 역말천은 원동천(소하천)으로 유입됨. ■ 상류부는 역말저수지, 농경지 및 일부 주거지가 위치함. ■ 중류부는 농경지와 주거지, 교육시설 등이 위치함. 소하천 일부구간 복개되어 도로로 쓰이고 있으며, 경부고속도로를 수로암거로 관통하여 흐르고 있음. ■ 하류부는 공장 및 주거지가 위치하며 오산TG 하부를 관통하여 원동천으로 유입 ■ 제방사면은 급경사 석축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상류 일부구간은 호안 미설치						
							
현 장 사 진							
상류부(과업시점)		중류부			하류부(과업종점)		
							

<표 계속> 대상 소하천별 현황(서동천)

소하천명	서동천	유역면적 (km ²)	0.92	과업연장 (km)	1.100	유로연장 (km)	1.93
분 류	가장천	위 치	시점		종점		
			서동 549		서동 637-5		
소하천 개 황	■ 소하천 수계망 : 안성천 ⇐ 진위천 ⇐ 오산천 ⇐ 가장천 ⇐ 서동천						
하 천 현 황	■ 서동천은 지방하천 가장천으로 유입됨.						
	■ 상류부는 주택 및 공장이 위치함.						
	■ 중류부 양안은 농경지가 위치함.						
	■ 하류부는 일부 공장 및 농경지가 위치하며 가장천으로 합류함.						
	■ 제방 일부 사면이 포락되었으며 하상에 퇴적구간이 있음.						
	■ 소하천 전구간 「오산 세교3지구 공공주택지구」 개발 예정 부지임.						
							
현 장 사 진							
상류부(과업시점)		중류부			하류부(과업종점)		
							

<표 계속> 대상 소하천별 현황(문시천)

소하천명	문시천	유역면적 (km ²)	6.45	과업연장 (km)	2.666	유로연장 (km)	3.79
분 류	삼미천	위 치	시점		종점		
			외삼미동 70-2		세교동 568-12		
소하천 개 황	■ 소하천 수계망 : 안성천 ⇐ 진위천 ⇐ 황구지천 ⇐ 삼미천 ⇐ 문시천						
하 천 현 황	■ 문시천은 지방하천 삼미천으로 유입되는 하천임. ■ 오산시와 화성시 경계지점에 위치하고 있으며, 외삼미리 제2저수지에서 발원함. ■ 상류부는 대부분은 농경지이며 일부 주거지와 인접함. ■ 상류부 완성제방으로 급경사 호안 및 농경지 인근 제방도로가 단절되어 있음. ■ 중하류부는 주거, 공업, 산업시설 등 위치하며 서동탄역, 1번국도 등 교통시설이 횡단함. ■ 중하류부 대부분 완성제방으로 주거지 부분 옹벽 및 블록형 호안이 설치되어 있음. ■ 본류인 삼미천은 「보광천 등 9개 하천기본계획」에서 수립중인 하천임.						
현 장 사 진							
상류부(과업시점)		중류부			하류부(과업종점)		

<표 계속> 대상 소하천별 현황(외삼미천)

소하천명	외삼미천	유역면적 (km ²)	1.19	과업연장 (km)	0.811	유로연장 (km)	1.66
분 류	문시천	위 치	시점		종점		
			외삼미동 545-21		외삼미동 492-6		
소하천 개 황	■ 소하천 수계망 : 안성천 ⇐ 진위천 ⇐ 황구지천 ⇐ 삼미천 ⇐ 문시천 ⇐ 외삼미천						
하 천 현 황	■ 외삼미천은 도심지 지하관로에 유입하여 소하천 문시천으로 유입되는 하천임. ■ 상류부는 대부분 산업, 공업지역으로 좌안 일부 농경지가 위치하며, 좌안부는 유지관리용 제방도로 미확보 구간임. ■ 중·하류부 우안은 대부분 농경지로 좌안은 산업·공업 지역임. 좌안은 대부분 유지관리용 제방도로 미확보 상태이며, 우안은 제방폭 약 2m 내외로 조사되었음. ■ 하천의 제방은 대부분 토사제방으로 일부 급경사(석축 등) 호안이 설치되어 있음.						
							
현 장 사 진							
상류부(과업시점)		중류부		하류부(과업종점)			
							

<표 계속> 대상 소하천별 현황(양산1천)

소하천명	양산1천	유역면적 (km ²)	0.64	과업연장 (km)	0.988	유로연장 (km)	1.34
분 류	황구지천	위 치	시점		종점		
			양산동 산19-3		양산동 515-1		
소하천 개 황	■ 소하천 수계망 : 안성천 ⇐ 진위천 ⇐ 황구지천 ⇐ 양산1천						
하 천 현 황	■ 양산1천은 국가하천 황구지천으로 유입되는 하천임. ■ 상류부는 하천주변 산지 및 농경지가 위치함. ■ 중류부는 좌우 대부분이 농경지이며, 일부 주거지가 위치함. ■ 『오산세마1지구 도시개발사업 계획지구』가 하천과 인접하여 계획되어 있으나, 2018년 경기도 건축심의 부결 및 장기미집행 상태임. ■ 하류부는 평택화성고속도로를 수로암거로 관통하여 흐르고 있음. ■ 사면은 단단면 토사사면으로 일부 세굴의 흔적이 있음.						
							
현 장 사 진							
상류부(과업시점)		중류부		하류부(과업종점)			
							

<표 계속> 대상 소하천별 현황(양산2천)

소하천명	양산2천	유역면적 (km ²)	0.49	과업연장 (km)	0.690	유로연장 (km)	1.41
분 류	황구지천	위 치	시점		종점		
			양산동 631		양산동 528-11		
소하천 개 황	■ 소하천 수계망 : 안성천 ⇐ 진위천 ⇐ 황구지천 ⇐ 양산2천						
하 천 현 황	■ 양산2천은 국가하천 황구지천으로 유입되는 하천임. ■ 상류부 우안은 대부분 산지이며, 좌안은 농경지 및 일부 주거지가 위치함. ■ 중류부는 좌우 대부분이 농경지이며, 일부 주거지가 위치함. ■ 『오산세마1지구 도시개발사업 계획지구』가 하천과 인접하여 계획되어 있으나, 2018년 경기도 건축심의 부결 및 장기미집행 상태임. ■ 하류부는 평택화성고속도로를 수로암거로 관통하여 흐르고 있음. ■ 사면은 대부분 토사사면이며, 일부 주거지 구간에 옹벽이 설치되어 있음.						
							
현 장 사 진							
상류부(과업시점)		중류부			하류부(과업종점)		
							

〈표 계속〉 대상 소하천별 현황(서랑천)

소하천명	서랑천	유역면적 (km ²)	4.94	과업연장 (km)	1.400	유로연장 (km)	5.15
분 류	황구지천	위 치	시점		종점		
			서랑동 산23-3		서랑동 374-46		
소하천 개 황	■ 소하천 수계망 : 안성천 ⇐ 진위천 ⇐ 황구지천 ⇐ 서랑천						
하 천 현 황	■ 서랑천은 국가하천 황구지천으로 유입되는 하천임. ■ 상류부 대부분은 농경지 및 일부 주거지가 위치하며, 봉담-동탄고속도로가 횡단함. ■ 중류부 대부분은 농경지 및 일부 주거지가 위치하며, 좌안 일부 산지 구간임. ■ 하류부는 평택화성고속도로의 교량이 소하천을 횡단함. ■ 우안부 제방도로는 상~하류를 연결하고 있으며, 좌안부는 일부 단절되어 있음. ■ 대부분 구간의 호안 및 독마루 상태가 양호하며, 서랑저수지에서 발원함.						

현 장 사 진		
상류부(과업시점)	중류부	하류부(과업종점)

<표 계속> 대상 소하천별 현황(지곳1천)

소하천명	지곳1천	유역면적 (km ²)	3.37	과업연장 (km)	1.410	유로연장 (km)	2.83
분 류	서랑천	위 치	시점		종점		
			지곳동 534-81		지곳동 534-1		
소하천 개 황	■ 소하천 수계망 : 안성천 ⇐ 진위천 ⇐ 황구지천 ⇐ 서랑천 ⇐ 지곳1천						
하 천 현 황	■ 지곳1천은 서랑저수지에 유입된 후 소하천 서랑천으로 방류되는 하천임. ■ 상류부는 좌안 일부 산지 및 소하천 복개후 마을안길로 사용중이며, 마을내에 주거지 및 공장 등이 위치함. ■ 중류부 좌안은 상업지 및 일부 산지이며, 우안은 도로(지곳중앙로)가 위치함. ■ 중·상류부 일부구간 『오산시 지곳일반산업단지 조성계획』이 계획되어 있음. ■ 하류부 대부분은 농경지 및 일부 주거지가 위치하며, 사면부는 옹벽 및 급경사 호안으로 조사되었음.						
							
현 장 사 진							
상류부(과업시점)		중류부			하류부(과업종점)		
							

<표 계속> 대상 소하천별 현황(지곶2천)

소하천명	지곶2천	유역면적 (km ²)	1.38	과업연장 (km)	0.699	유로연장 (km)	1.19
분 류	지곶1천	위 치	시점		종점		
			지곶동 534-26		지곶동 387-6		
소하천 개 황	■ 소하천 수계망 : 안성천 ⇐ 진위천 ⇐ 황구지천 ⇐ 서랑천 ⇐ 지곶1천 ⇐ 지곶2천						
하 천 현 황	■ 지곶2천은 소하천 지곶1천으로 유입되는 하천임. ■ 상류부는 양안 농경지 구간이며, 시점의 상류는 아파트단지가 위치함. (2018년 입주) ■ 중류부는 대부분 농경지 구간이며, 봉담-동탄고속도로를 수로암거로 관통하여 흐르고 있음. ■ 하류부는 대부분 농경지 및 일부 주거지가 위치함. ■ 봉담-동탄고속도로 상류구간은 전구간 수로의 형태이며, 일부구간 복개되어 도로로 쓰이고 있음.						
							
현 장 사 진							
상류부(과업시점)		중류부			하류부(과업종점)		
							

<표 계속> 대상 소하천별 현황(지곳3천)

소하천명	지곳3천	유역면적 (km ²)	0.51	과업연장 (km)	0.545	유로연장 (km)	1.12
분 류	지곳1천	위 치	시점		종점		
			지곳동 534-23		지곳동 534-83		
소하천 개 황	■ 소하천 수계망 : 안성천 ⇐ 진위천 ⇐ 황구지천 ⇐ 서랑천 ⇐ 지곳1천 ⇐ 지곳3천						
하 천 현 황	■ 지곳3천은 소하천 지곳1천으로 유입되는 하천임. ■ 중·상류부는 좌안측 산지이며, 우안측 도로(독산성로)가 위치함. ■ 중·하류부는 도로 및 상업시설이 위치함. ■ 하상경사는 급경사이며 월류시 하천의 좌안측은 표고가 높아 우안측에 침수피해가 집중될 것으로 보임. ■ 하천의 양안에 석축이 설치되어 있으며, 상태는 양호함.						
							
현 장 사 진							
상류부(과업시점)		중류부		하류부(과업종점)			
							

〈표 계속〉 대상 소하천별 현황(내삼미천)

소하천명	내삼미천	유역면적 (km ²)	1.34	과업연장 (km)	0.827	유로연장 (km)	1.38
분 류	꺾리천	위 치	시점		종점		
			내삼미동 704-1		내삼미동 708-8		
소하천 개 황	■ 소하천 수계망 : 안성천 ⇐ 진위천 ⇐ 오산천 ⇐ 꺾리천 ⇐ 내삼미천						
하 천 현 황	■ 내삼미천은 지방하천 꺾리천으로 유입되는 하천임 ■ 상·중·하류부 좌안은 도로(북삼미로)가 위치하며, 우안은 대부분 농경지이고, 일부 주거지 및 상업시설이 위치함. ■ 하천의 제방은 양안 완성제방으로 호안상태는 양호함. ■ 하류부 내삼미저류지를 거쳐 경기대로(지하관로)로 관류한 후 꺾리천으로 합류. ■ 하천의 종점부 『오산세교지구 택지개발사업』이 예정되어 있음.						



현 장 사 진		
상류부(과업시점)	중류부	하류부(과업종점)
		

2.3 평가항목의 설정

- 약식전략환경영향평가의 평가항목 설정은 계획의 특성 및 대상지역의 현황을 파악한 후 계획시행으로 인하여 영향이 예상되는 환경분야 전반에 걸쳐 계획특성에 맞는 평가항목을 설정하였으며, 환경에 미칠 영향과 중요도가 큰 항목에 대하여는 중점적으로 조사·예측분석 및 저감대책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하였음
- 본 약식전략환경영향평가의 평가항목은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별표 1] 환경영향평가등의 분야별 세부평가항목」 및 「환경영향평가서등 작성 등에 관한 규정, 기후에너지환경부고시 제2025-10호」 등을 고려하여 선정하였음

<표 2.3-1> 약식전략환경영향평가 항목 및 범위 등의 결정

환경영향평가법
제11조(평가 항목·범위 등의 결정) ①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계획을 수립하려는 행정기관의 장은 전략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기 전에 평가준비서를 작성하여 환경영향평가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다음 각 호의 사항(이하 이 장에서 “전략환경영향평가항목등”이라 한다)을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제9조제2항제2호에 따른 개발기본계획(이하 “개발기본계획”이라 한다)의 사업계획 면적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미만인 경우에는 환경영향평가협의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1.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 2. 토지이용구상안 3. 대안 4. <u>평가 항목·범위·방법 등</u> 제11조의2(약식전략환경영향평가) ①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계획을 수립하려는 행정기관의 장은 해당 계획이 입지 등 구체적인 사항을 정하고 있지 않거나 정량적인 평가가 불가능한 경우 등에는 <u>제11조제1항제4호의 사항을 간략하게 하는 약식전략환경영향평가 실시</u>를 결정할 수 있다.

〈표 2.3-2〉 약식전략환경영향평가 항목의 선정

구 분		평가항목		선정	선정(제외) 사유
계획의 적정성		상위계획 및 관련 계획과의 연계성		○	• 상위 계획 및 관련 계획과의 연계성 분석· 평가
		대안 설정·분석의 적정성		○	• 계획목적 달성을 위한 대안의 설정 및 분석 의 적정성 평가
입 지 의 타 당 성	자연 환경의 보전	생물다양성· 서식지 보전	동·식물상	○	• 동·식물상 및 법정보호종 등 조사 • 계획 시행에 따른 동·식물상에 미치는 영향 예측·분석 및 저감방안 수립
			자연환경 자산	○	• 계획하천 주변 자연환경자산 조사 • 자연환경자산 훼손 여부 검토
		지형 및 생태축의 보전	지형·지질	○	• 계획하천의 지형현황 검토 • 보전가치가 있는 지형·지질의 영향 검토
			자연경관의 보전	위락·경관	○
		수환경의 보전	수질 및 수리·수문	○	• 계획하천의 수질, 수리·수문 현황 파악 • 계획 수립시 주변 수계에 미치는 영향 검토
			해양환경	×	• 계획하천에 해양의 분포 없음
	생활 환경의 안정성	환경기준 부합성	기 상	○	• 계획하천의 기상 현황 파악
			대기질	○	• 계획하천의 대기질 현황 파악 • 계획 수립시 대기오염물질 발생 검토
			악 취	×	• 계획 수립시 악취발생 요인 없음
			온실가스	○	• 온실가스 배출 및 저감정책 검토
			토 양	○	• 계획하천의 토양오염 현황 파악 • 계획 수립시 토양오염 여부 검토
			소음·진동	○	• 계획하천의 소음·진동 현황 파악 • 계획 수립시 소음·진동 발생 검토
			위생·공중 보건	×	• 건강 유해물질의 발생 없음 • 건강영향 항목의 평가 대상사업에 미해당
			전파장해	×	• 계획 시행으로 인한 전파장해 요인 없음
			일조장해	×	• 개발계획이 없으므로 일조장해 검토 불가
		환경기초시설의 적정성		○	• 계획하천의 환경기초시설 현황 파악
		자원·에너지 순환의 효율성	친환경적 자원순환	○	• 계획하천의 폐기물 발생 및 처리현황 파악 • 개발사업 시행시 발생 폐기물 적정 처리
		사회·경제 환경과의 조화성	환경친화적 토지이용	토지이용	○
	인구·주거			×	• 계획 수립시 인구, 주거 변화 없음
	산 업			×	• 계획하천의 산업에 미치는 영향 없음

2.4 항목별 평가대상지역의 설정

- 금회 계획수립으로 인하여 향후 발생할 수 있는 환경상 영향을 정성적으로 예측·분석하기 위한 항목별 평가대상지역을 설정하였음

〈표 2.4-1〉 항목별 평가대상지역 설정

평가항목			평가대상지역 선정 사유	평가대상지역	비 고
자연 환경의 보전	생물다양성 ·서식지 보전	동·식물상	• 계획시행으로 인하여 식생 및 동·식물의 변화가 예상되는 지역	계획하천 및 주변지역 (500m 이내)	공사시
		자연환경 자산	• 자연환경자산 등에 영향이 예상되는 지역	계획하천 및 주변지역	공사시
	지형 및 생태축 보전		• 계획수립에 따른 정비사업으로 지형형상 변화 예상 지역	계획하천 및 주변지역	공사시
	자연경관의 보전		• 계획수립에 따른 정비사업으로 경관의 변화가 예상되는 지역	계획하천 및 주변지역	운영시
	수환경의 보전		• 계획수립에 따른 정비사업으로 발생하는 점오염원 및 비점오염원 등의 수질오염물질로 영향이 예상되는 수계	계획하천 및 유역	공사시 운영시
생활 환경의 안정성	환경기준 부합성	기 상	• 오산시와 가장 인접한 기상 관측지점	오산시 (수원기상관측망)	-
		대기질	• 계획수립에 따른 정비사업으로 발생하는 대기오염물질로 영향이 예상되는 지역	계획하천 및 주변지역 (500m 이내)	공사시
		온실가스	• 계획수립에 따른 정비사업으로 온실가스 발생이 예상되는 지역	계획하천	공사시
		토 양	• 계획수립에 따른 정비사업으로 토양오염이 우려되는 지역	계획하천	공사시
		소음·진동	• 계획수립에 따른 정비사업으로 발생하는 소음·진동으로 영향이 예상되는 지역	계획하천 및 주변지역 (300m 이내)	공사시
	환경기초시설의 적정성		• 오산시 관내 환경기초시설 검토	오산시	-
	자원·에너지순환의 효율성		• 계획수립에 따른 정비사업으로 폐기물 발생이 예상되는 지역	계획하천	공사시
사회·경제 환경과의 조화성	환경친화적 토지이용		• 계획수립으로 인하여 토지이용상의 변화가 예상되는 지역	계획하천	운영시

2.5 평가범위 및 방법 설정

- 평가항목별 평가 범위 및 방법은 「환경영향평가서등 작성 등에 관한 규정, 기후에너지환경부 고시 제2025-10호」를 고려하여 본 계획의 특성 및 대상지역의 현황에 따라 설정하였음

〈표 2.5-1〉 평가항목별 범위 및 방법

평가항목				평가 범위	평가 방법
계획의 적정성	상위 계획 및 관련계획과의 연계성			오산시	• 상위계획 및 관련계획 검토
	대안설정·분석의 적정성			오산시	• 계획비교, 수단·방법 등의 대안을 선정하여 비교·검토
입 지 의 타 당 성	자연 환경의 보전	생물 다양성 ·서식지 보전	동·식물상	계획하천 및 주변지역	• 동·식물상 및 법정보호종 등 조사 • 계획 시행에 따른 동·식물상에 미치는 영향 예측·분석 및 저감방안 수립
			자연환경 자산	계획하천 및 주변지역	• 계획하천 주변 자연환경자산 조사 • 자연환경자산 훼손 여부 검토
		지형 및 생태축 보전		계획하천	• 계획하천 지형 및 지질 조사 • 지형의 변화, 보전가치가 있는 지형 훼손 등 검토
		자연경관의 보전		계획하천 및 주변지역	• 자연경관영향 심의대상 검토 • 계획하천 주변 경관자원 및 변화 검토
		수환경의 보전		계획하천 주변수계	• 수질 현황 및 수자원 이용현황, 수리·수문 현황 등 조사 • 계획 수립시 주변 수계에 미치는 영향예 측 및 저감방안 검토 • 계획 홍수량, 홍수위 등 수리수문 변화 • 하천시설물 계획 등 치수계획
	생활 환경의 안정성	환경 기준 부합성	기 상	오산시	• 대상지역의 기상 현황 조사
			대기질	계획하천 및 주변지역	• 대기질 현황 조사 • 계획 수립시 대기질 영향예측 및 저감방 안 검토
			온실가스	오산시	• 온실가스 배출현황 및 원단위 조사 • 온실가스 저감 법령 및 대책 검토
			토 양	오산시	• 토양오염 현황 조사 • 계획 수립시 토양오염 여부 및 저감방안 검토
			소음·진동	계획하천 및 주변지역	• 소음·진동 현황 조사 • 계획 수립시 소음·진동 발생예측 및 저감 방안 검토
		환경기초시설의 적정성		오산시	• 대상지역의 환경기초시설 현황 조사
		자원·에너지 순환의 효율성		계획하천	• 폐기물 발생 및 처리 현황, 폐기물처리시 설 조사 • 계획 수립시 발생하는 폐기물의 적정 처 리방안 검토
	사회·경제 환경과의 조화성	환경친화적 토지이용		계획하천	• 계획하천 입지여건 검토 • 계획 수립시 토지이용의 변화 검토

제 3 장 대안의 설정

3.1 계획비교에 따른 대안검토

- 본 계획에 대한 “계획 수립(Action)”과 “계획 미수립(No Action)”을 비교·검토하여 최적의 대안을 선정하였음

〈표 3.1-1〉 계획비교에 대한 대안검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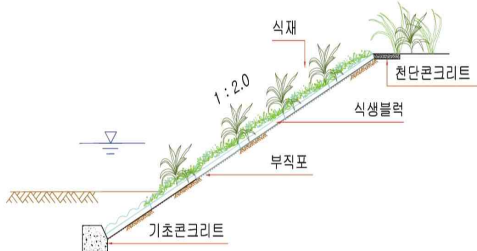
구 분	대 안 1(Action)	대 안 2(No Action)
계획수립 여 부	계획 수립시	계획 미수립시
내 용	• 계획소하천에 대하여 치수와 이수 및 환경적으로 적정한 계획을 수립하여 예측 가능한 재해에 대비함.	• 계획소하천에 대하여 치수와 이수 및 환경측면에 대한 종합적인 계획수립이 불가함.
장 점	• 홍수에 대비한 치수대책 수립이 가능함. • 계획소하천에 대한 치수와 이수계획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수립함.	• 하천 규모를 그대로 유지하여 개발계획에 의한 주변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방지할 수 있음.
단 점	• 개발계획에 따른 주변 환경에 대한 영향발생이 불가피함. • 대부분의 지역에서 적정규모의 통수 단면 확보를 위한 하천 확폭이 필요하여 주변 사유지 보상과 토공계획이 불가피함.	• 집중호우나 홍수 피해에 대한 체계적인 대책 수립이 불가함. • 계획소하천에 대한 치수, 이수 및 환경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개발계획 수립이 불가능.
선 정	○	

3.2 수단·방법에 따른 대안검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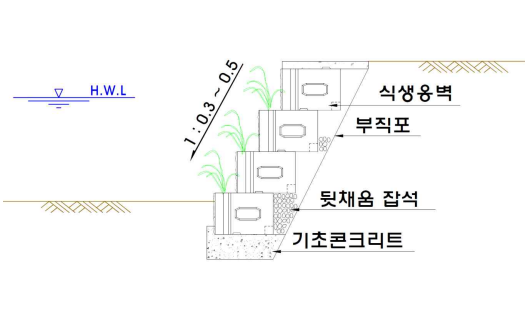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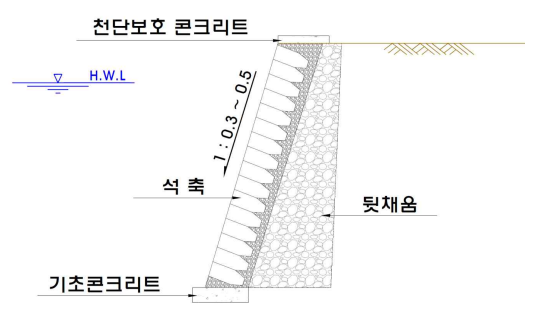
가. 호안공법계열별 검토

- 본 오산시소하천정비종합계획 재수립에 있어 적용 가능한 호안공법(안)을 비교·검토하였으며, 향후 시행계획(실시계획)을 통한 호안공법 선정 시 지형·토지이용 현황, 생태 적합도 및 경관 등 해당지구의 특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최종적인 호안공법을 선정할 계획임.

〈표 3.2-1〉 수단·방법에 대한 대안검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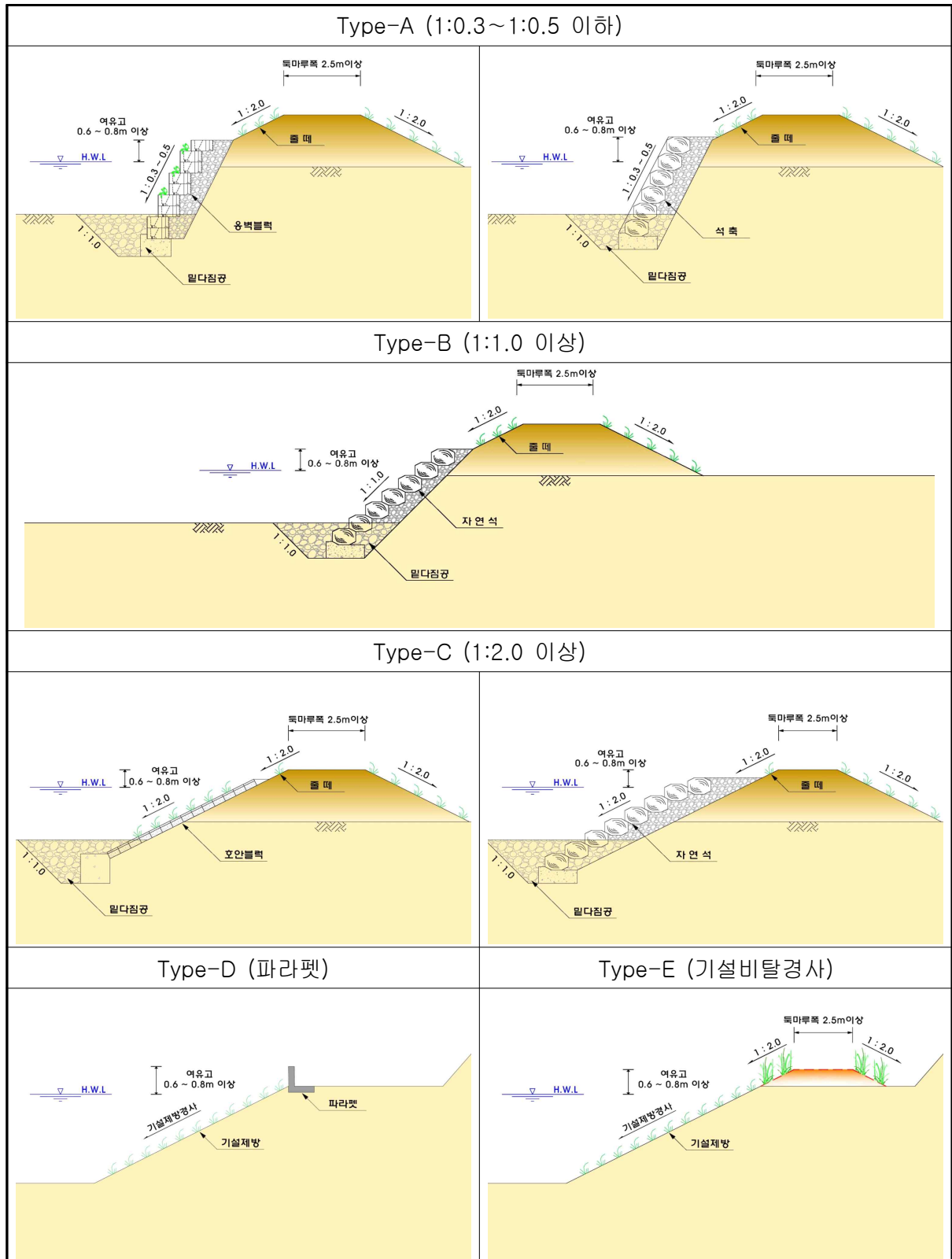
구 분	식생호안블럭	자연석 쌓기
시 공 사 진		
표 준 면		
장 점	• 다공성의 콘크리트 생태구조물로서 치수기능 및 식물의 생육과 활착이 동시 가능 • 식물도입에 따른 경관 하천조성 및 생태 복원 가능	• 내구성 우수 • 콘크리트가 아닌 자연석을 호안으로 사용하므로 식물과 더불어 아름다운 자연경관 창출 • 자연석쌓기 공간에 어류, 곤충, 조류의 서식처 제공
단 점	• 블록내 식생활착 기술필요 • 곡선부 시공시 불안전 결속 우려	• 공사비 고가 • 대규모 시공시 자재 수급 불리
경 사	1 : 2.0 이상	1 : 1.0 이상

<표 계속> 수단·방법에 대한 대안검토

구 분	식생옹벽블럭	석축쌓기
시 공 사 진		
표 준 면		
장 점	• 재료구입 및 시공이 용이 • 친환경적으로 생태환경의 연속성 확보 • 자연의 자연석 문양으로 자연미와 경관성 확보 • 유속이 빠르고 급구배 경사지에 적합	• 유속에 대한 저항력이 우수 하상세굴에 다소 안전함 • 여러 법면 구배로 시공이 가능 • 구조적 안정성 확보 기능이 우수한 편임
단 점	• 단기적으로 식생이 활착되지 않음 • 곡선부 시공시 불안전 결속 우려	• 찰쌓기 구조에 따른 생태환경 파괴 • 식생도입이 불가능하며 친환경적 하천 조성 불가
경 사	1 : 0.3 ~ 0.5	1 : 0.3 ~ 0.5

나. 호안타입별 대안검토

- 제방의 표준단면 및 호안공법은 금회 과업에서 시행한 기존제방 능력검토, 제방 및 호안의 기준 검토 내용, 각 소하천의 유속 및 소류력 등의 수리특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각 하천의 경관특성, 정비방향 등을 토대로 하여 치수적으로 안전하며, 소하천 주변경관과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다음 그림과 같이 표준단면 및 호안의 종류를 제시하였음
- 각 소하천별 개수계획에 따른 개수지구별 표준단면 제원 및 적용 호안공법 등에 대한 식생도입은 가급적 외래종을 지양하고, 오산시 소하천 주변에 자생하는 종을 우선적으로 선정하여 주변 지역 식물상과의 연계성을 확보해야 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특히 호안이 없는 무제부 구간과 연결부에 설치되는 호안은 생태적 연결성을 고려하여 친환경 호안공법을 적용하는 것이 필요함
- 향후 사업시행단계(개발단계)에서는 개수지구의 특성, 축제재료 및 방법, 호안의 종류 및 특징, 재료 구득의 용이성, 지반의 지질상태 등에 따라 통수단면에 문제가 없는 범위 내에서 호안적용에 따른 안정성검토 등을 통하여 동등 이상의 안정성 및 내구성과 환경적 유리함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업시행청과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으며, 그 사유 및 검토 내용을 해당 사업보고서에 자세히 수록하되, 제방의 표준단면(독마루폭, 여유고 등)은 설계기준에 위배되지 않도록 하고, 또한, 여유고가 부족하여 홍수방어벽 또는 기존 제방에 성토를 통한 더둑기로 보충하는 구간에 대해서는 추후 제방상태, 주변현황 등을 고려하여 가장 적합한 공법으로 설계 및 시공이 이루어지도록 함
- 본 소하천정비종합계획 재수립에 있어 적용 가능한 호안공법(안)을 비교·검토하였으며, 향후 시행계획(실시계획)을 통한 호안공법 선정 시 지형·토지이용 현황, 생태적합도 및 경관 등 해당지구의 특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최종적인 호안공법을 선정할 계획임.



(그림 3.2-1) 타입별 호안공법에 대한 대안 검토

제 4 장 주민 등에 대한 의견 수렴계획

4.1 평가 항목 등의 결정내용 공개

가. 결정내용 공개

- 관련 법령 : 환경영향평가법 제11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제1항
- 결정내용 공개 : 환경영향평가협의회에서 결정된 약식전략환경영향평가 항목 등을 결정된 날로부터 20일 내에 14일 이상 공개하도록 하겠음
- 공개 장소
 - 약식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을 관할하는 시·군·구 또는 약식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계획을 수립하려는 행정기관의 정보통신망(오산시 홈페이지)
 - 환경영향평가 정보지원시스템(<http://www.eiass.go.kr/>)

나. 약식전략환경영향평가 반영

- 관련 법령 :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제10조제2항
- 약식전략환경영향평가서에 의견 반영
 - 공개된 약식전략환경영향평가 항목 등에 대하여 주민 등이 의견을 제출한 경우에는 이를 검토하여 약식전략환경영향평가에 반영할 계획임

4.2 약식전략환경영향평가 주민의견 수렴

가. 약식전략환경영향평가서 작성

- 약식전략환경영향평가서를 작성하여 주민 등의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며, 동시에 관련 행정기관 및 협의기관(한강유역환경청)으로부터 의견을 듣도록 하겠음
- 약식전략환경영향평가서 제출 기관
 - 협의기관의 장 : 한강유역환경청
 - 승인기관의 장 : 경기도청
- 평가서 검토 기간 : 접수된 날부터 30일 이내

나. 약식전략환경영향평가서 공람 공고

- 공고 주체 : 개발계획을 수립하려는 행정기관의 장
- 공고 시기 : 약식평가서를 제출한 날부터 10일 이내

- 전국을 보급지역으로 하는 일간신문 및 약식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을 보급지역으로 하는 지역신문에 각각 1회 이상 공고
- 공고 내용
 - 개발계획의 개요
 - 약식전략환경영향평가서에 대한 공람 기간 및 장소
 - 약식전략환경영향평가서에 대한 의견의 제출시기 및 방법
 - 설명회 일시 및 장소
- 공고내용 게시
 - 오산시 홈페이지 : 공고 및 공람 내용, 평가서 요약문
 - 환경영향평가 정보지원시스템 : 공고 및 공람 내용, 평가서

다. 약식전략환경영향평가서 공람

- 공람 기간 : 20일 이상 40일 이내(공휴일 제외)
- 공람 장소 : 개발계획 대상지역에 1개소 이상

라. 설명회 및 공청회 개최

- 설명회 개최 주체 : 개발계획을 수립하는 행정기관의 장
- 설명회 시기 : 공람 기간 내(1회 실시)
- 설명회 실시 공고 : 설명회 개최하기 7일전
 - 평가서 초안 공람 공고 사항에 포함하여 공고
- 공청회 개최
 - 공청회 개최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출한 주민이 30명 이상인 경우
 - 공청회 개최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출한 주민이 5명 이상이고, 평가서 초안에 대한 의견을 제출한 주민 총수의 50% 이상인 경우

마. 주민의견 제출

- 의견 제출 기한 : 공람기간 시작 ~ 공람기간 완료 후 7일 이내
- 제출 장소 : 공람장소 및 계획을 수립하는 행정기관

바. 주민 등의 의견 수렴 결과 및 반영여부 공개

- 약식전략환경영향평가에 대한 주민의견 수렴 결과에 대한 반영 여부를 공개
- 공개 시점 : 약식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 요청 후
- 내용 게시 장소 : 오산시 홈페이지, 환경영향평가 정보지원시스템
- 내용 게시 기간 : 14일 이상 게시

제 5 장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심의결과

5.1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실시근거

- 「환경영향평가법」 제11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에 의거하여 금회 “2025년 오산시 소하천정비종합계획 재수립”의 약식전략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기 전에 평가준비서를 작성하여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심의를 실시함

5.2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심의 개요

- 구성 및 운영 주체 : 오산시(계획수립기관)
- 심의방법 : 서면심의
- 심의기간 : 2026. 04. 01 ~ 2026. 04. 15(14일간)
- 심의위원 : 관계기관 공무원 및 민간전문가, 지역주민 등 총 8인

〈표 5.2-1〉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심의의원

구 분		분 야	위원명단		비 고
			소 속	직위(직책)	
1	위원장	계획수립기관	오산시	환경사업소장	소속 공무원
2	위원	계획수립기관	오산시	하천정책팀장	소속 공무원
3	위원	관할 지자체	오산시 (기후환경정책과)	주무관	소속 공무원
4	위원	협의기관	한강유역환경청 (환경평가과)	팀장	소속 공무원
5	위원	민간전문가	한경대학교	교수	위원장 위촉
6	위원	민간전문가	한국환경연구원	선임연구위원	협의기관 추천
7	위원	주민대표	오산시 주민자치협의회	회장	계획지역 거주
8	위원	민간전문가	(주)대중	상무	시민단체 추천

5.3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심의의견

◦ 본 계획의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심의의견에 대한 조치내용은 다음과 같음

〈표 5.3-1〉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심의의견 및 반영결과

소 속	심의의견	반영결과	반영여부
계획수립 기관1	□ 총 괄 의 건		
	• 소하천정비종합계획(재수립) 전략환경영향평가는 홍수 등 자연재해 예방, 치수 안정성 확보, 자연친화적 하천정비를 통해 수생태계의 보전 및 소하천의 체계적인 관리·정비를 도모하는 방향으로 계획을 추진하여야 함	• 홍수 등 자연재해 예방, 치수 안정성 확보, 자연친화적 하천정비를 통한 수생태계의 보전 및 소하천의 체계적인 관리·정비를 도모하는 계획을 수립하겠음	반영
	□ 평가항목·범위 등에 대한 검토의견		
	1. 평가대상지역의 설정 • 오산시 소하천 특성 및 여건에 따라 기준을 마련하여야 하며, 하천기본계획, 현장조사, 문헌조사 등을 반영하여 방향을 설정하여야 함. 또한, 도시계획, 산림 및 공원, 하수관로 등 소하천 인근 지역을 관리하는 부서의 의견을 수렴하여 계획을 수립하여야 함 • 공사시 발생하는 소음·진동 평가 대상지역 범위는 소하천 인근 정온시설 현황 등을 고려하여 설정하기 바람	• 오산시 소하천 특성 및 여건에 따라 기준을 마련하였고 하천기본계획 등을 반영하여 설정하며, 소하천 인근 지역을 관리하는 부서의 의견을 수렴하여 계획을 수립하겠음 • 공사시 소음·진동 평가 대상지역 범위는 소하천 인근 정온시설 현황 등을 고려하여 설정하겠음	반영
	2. 토지이용 구상안 • 소하천 인근 지역의 공원, 녹지 등이 하천과 연결되도록 하고, 지형 변화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계획을 수립하여야 함	• 소하천 인근 지역의 공원, 녹지 등이 하천과 연결되도록 하며, 지형 변화를 최소화하는 계획을 수립하겠음	반영
	3. 대안 • 하천 정비로 인한 생태계 훼손을 방지하기 위하여, 복원계획 설정 등 환경친화적 대안을 제시하여 계획에 반영하기 바람 • 소하천 정비 시 일률적인 호안공법 적용을 지양하고, 각 소하천의 수리·수문 특성, 생태적 가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적정 공법을 대안으로 제시하여야 함	• 하천 정비로 인한 생태계 훼손을 방지하기 위한 환경친화적인 대안을 선정하여 계획에 반영하겠음 • 소하천 정비시 각 소하천의 수리·수문 특성, 생태적 가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적정 공법을 적용하겠음	반영

〈표 계속〉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심의의견 및 반영결과

소 속	심의의견	반영결과	반영여부
계획수립 기관1	- 급경사 및 유속이 큰 구간은 구조적 안정성을 확보하고, 완경사 구간은 식생호안 등 자연형 호안공법을 우선 검토 - 호안공법의 식물 도입 시 생태계교란종 및 외래종을 지양하고, 하천 생태계에 적합한 식생을 계획하여야 함.	- 경사 및 유속에 따라 구조적 안정성 확보 및 자연형 호안공법을 검토하겠음 - 호안공법의 식물 도입 시 생태계교란종 및 외래종을 지양하고, 하천 생태계에 적합한 식생을 계획하겠음	반영
	4. 평가 항목·범위·방법 등 • 자연환경의 보전 - 하천별로 주요 지점을 지정하여 문헌조사 및 현장조사를 기반으로 법정보호종, 멸종위기종 등 주요 보호대상 동·식물에 대한 보호대책을 수립하여야 함 - 오산시의 소하천은 전형적인 도시형 하천으로, 집중호우 시 수위 상승이 급격한 특성을 보이므로, 수리·수문 및 하천주변 지형 현황 등을 명확히 파악하여, 하천이 범람되지 않도록 계획을 수립하여야 함 • 생활환경의 안정성 - 공사 시 발생하는 토사유출 등 수질오염물질 발생으로 인한 영향을 예측하고, 이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마련하여야 함. 또한, 공사 시 주변 정온시설에 대한 소음·진동으로 인한 피해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저감 방안을 마련하여야 함	• 하천별로 문헌 및 현지조사를 기반으로 법정보호종, 멸종위기종 등에 대한 환경보전대책을 수립하겠음 • 수리·수문 및 하천주변 지형 현황등을 파악하여, 하천이 범람되지 않도록 계획을 수립하겠음 • 공사시 발생하는 토사유출 등 수환경 보전에 대한 영향을 예측하고 이에 따른 환경보전대책을 수립하겠음 • 공사시 주변 정온시설에 대한 소음·진동 피해를 최소화 하도록 환경보전대책을 수립하겠음	반영
	5. 주민 등에 대한 의견수렴계획 •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주민 등의 의견 수렴 절차를 이행하고, 대상지역 주민들에게 적극적으로 홍보하여 수렴한 의견을 계획에 적극 반영하여야 함.	•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주민 등의 의견 수렴 절차를 이행하고, 대상지역 주민들에게 홍보하여 수렴한 의견을 계획에 반영하겠음.	반영
	6. 기 타 • 의견 없음	-	-

〈표 계속〉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심의의견 및 반영결과

소 속	심의의견	반영결과	반영여부
계획수립 기관2	□ 총 괄 의 건		
	• 소하천정비종합계획(재수립)에 따른 15개소 소하천에 대한 배수구역, 강우, 유량 등에 관한 제반사항 및 주변 환경 등을 고려하여 하천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적정 저감방안을 강구하여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 하여야 함.	• 15개소 소하천에 대한 배수 구역, 강우, 유량 등 제반사항 및 주변 환경 등을 고려하여 계획을 수립하고 환경보전대책을 강구하여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겠음	반영
	□ 평가항목·범위 등에 대한 검토의견		
	1. 평가대상지역의 설정 • 대상지역을 설정할 경우 설정사유(사업구역 경계설정 사유 포함)를 상세히 명기하고, 환경영향의 예측·분석에 사용된 기법, 내용 등 관련자료 명시 및 사용근거 등 타당성을 객관적으로 제시하여야 함. • 사업개요, 기본계획(안), 상위계획 및 관련계획과의 부합여부, 해당하천의 현황사진, 생태자연도, 국토환경성평가지도, 지형도(표고 및 경사 분석자료 포함) 등을 제시 • 동·식물상 평가대상지역 범위는 분류군에 따른 특성 및 생태계연결성 등을 고려하여 설정	• 설정사유를 명기하였고, 환경영향의 예측·분석에 사용된 기법, 내용 등 관련자료 및 사용근거를 평가서에 제시하겠음 • 사업개요, 기본계획(안), 상위계획 및 관련계획 부합성, 현황사진, 생태자연도, 국토환경성평가지도, 지형도 등을 평가서에 제시하겠음 • 동·식물상 평가대상지역 범위는 분류군에 따라 설정하겠음	반영
	2. 토지이용 구상안 • 집중호우 등 재해예방, 제내지 및 자연호안 등의 토지이용을 고려할 것 • 구간별 하천생태 현황을 토대로 구체적인 보전·관리계획 수립하여야 함 • 유로를 변경하는 경우 변경사유, 유로 변경 구간에 대한 구체적인 자료 제시	• 집중호우 등 재해예방, 제내지 및 자연호안을 고려하겠음 • 하천생태 현황을 토대로 환경보전대책을 수립하겠음 • 유로 변경구간은 없으며, 유로 변경이 생길 경우 구체적인 자료를 제시하겠음	반영
	3. 대안 • 항목별 저감방안은 여러 가지 대안을 제시하여 각 대안의 장단점을 비교 분석한 후 최종적으로 이행할 대안과 그 선정사유를 명시하여야 함	• 여러 가지 대안을 제시한 후 장단점을 비교·분석하여 최종적으로 이행할 대안과 그 선정사유를 명시하겠음	반영

〈표 계속〉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심의의견 및 반영결과

소 속	심의의견	반영결과	반영여부
계획수립 기관2	4. 평가 항목·범위·방법 등 • 계획의 적정성 - 상위계획 및 관련 계획과의 연계성을 검토하여 계획 하천과의 직·간접적으로 연계된 지역에 대해서는 관련 내용 및 시설물계획 연계성을 검토 제시 • 생물다양성·서식지 보전 - 동·식물상 조사 시 하천 구간별로 문헌조사, 탐문조사 및 현지조사 등을 통해 사업지역 및 인접 지역의 법정보호종 서식현황 제시, 영향예측 및 저감방안 제시 • 주변 자연경관에 미치는 영향 - 사업시행 시 주요 조망점에서의 경관 훼손여부를 검토하고 사업시행 전·후 경관 변화를 비교 예측하여 저감방안을 수립 • 수환경의 보전 - 치수적 안정성과 하천 생태계가 조화를 이룰수 있도록 사업계획 수립 - 하천의 통수단면적 확보 등의 이·치수적인 측면에서 검토를 통한 수리영향을 예측하고, 계획홍수위 및 하상고 등을 비교할 수 있는 종단면도 제시 - 계획평면도상에 하천구역(기존 및 변경 구분), 축조 및 인공시설물 설치 등의 하천계획을 모두 포함하여 제시 - 사업지구 인근의 농경지, 공장, 축사, 주거지 등에서 발생하는 점·비점오염물질의 하천 유입 차단방안 검토·제시 • 친환경적 홍수방어 대안 검토 - 하천의 자연성을 저하시키는 확폭, 제방 및 하도정비 등의 구조물 설치 위주계획을 지양	• 상위 및 관련계획과의 연계성을 검토하고 계획하천과 연계된 지역에 대해 관련내용 및 시설물 계획 연계성을 검토하겠음 • 동·식물상 조사 시 하천별 문헌 및 현지, 탐문조사 등을 통해 계획하천 및 인접 지역의 법정보호종 서식 현황 및 환경평가, 환경보전대책을 제시하겠음 • 주요 조망점에서의 경관 훼손여부를 검토하여 경관변화를 비교 예측하여 환경보전대책을 수립하겠음 • 치수적 안정성과 하천 생태계가 조화를 이루는 사업계획 수립하겠음 • 이·치수적인 측면에서 수리영향을 예측하고, 종단면도를 제시하겠음 • 계획평면도상 하천구역, 축조 및 인공시설물 설치 등의 하천계획을 포함하여 제시하겠음 • 계획하천 인근에서 발생하는 점·비점오염물질의 하천 유입 차단방안을 검토하겠음 • 하천의 자연성을 저하시키는 구조물 설치 위주계획을 지양하겠음	반영

<표 계속>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심의의견 및 반영결과

소 속	심의의견	반영결과	반영여부
계획수립 기관2	5. 주민 등에 대한 의견수렴계획 •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 주민들이 공람 및 설명회 등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다양한 방법을 활용하여 관련 사항을 적극 홍보하여야 하며, 주민 설명회 또는 공청회시 동 사업에 따른 환경적인 영향 등에 대하여 상세히 설명하고 이에 대한 주민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해야 함	•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 주민들이 공람 및 설명회 등 참여할 수 있도록 관련사항을 홍보하고, 주민설명회 또는 공청회시 본 계획에 따른 환경적인 영향을 설명하고 이에 대한 주민의견을 수렴하겠음	반영
	6. 기 타 • 금회 계획에 반영(신설, 재가설 등)된 개수계획에 대해서 사업의 필요성 등을 기수립 계획과 비교·검토하여 제시하여야 함 • 동 심의 결과를 반영·작성한 평가서의 세부적인 검토과정에 해당계획으로 인한 불가피한 환경영향을 충실히 검토하기 위하여 추가적인 보완이 필요한 경우 기 결정된 평가 항목·범위 등이 조정될수 있음을 감안하여야 함 • 전략환경영향평가서는 환경영향평가서 작성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작성하여야 함.	• 금회 계획에 반영된 개수계획에 대해서 사업의 필요성 등을 기수립 계획과 비교·검토하여 제시하겠음 • 동 심의 결과를 반영·작성한 평가서에 추가적인 보완이 필요한 경우 기 결정된 평가 항목·범위 등이 조정될수 있음을 감안하겠음 • 전략환경영향평가서는 환경영향평가서 작성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작성하겠음	반영

〈표 계속〉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심의의견 및 반영결과

소 속	심의의견	반영결과	반영여부
관할 지자체	□ 총괄의견		
	- 본 계획은 「소하천정비법」에 따라 오산시 관내 15개 소하천의 체계적인 정비 및 관리 지침을 마련하는 법정계획임. 기 수립된 종합계획의 타당성을 재검토하고 변화된 하천 여건을 반영하려는 취지는 적절하며, 약식전략환경영향평가를 통해 사업 시행 시 예상되는 환경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평가 항목과 범위를 적절하게 설정할 필요가 있음 - 최근 기상이변에 따른 국지성 호우 등에 대비하여 하천의 치수 안전성을 확보함과 동시에, 수변 생태계 보전이 조화롭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구체적인 환경 저감 방안 마련이 필요함. 향후 계획 수립과정에서 소하천별 특성에 맞는 자연친화적 공법 도입과 환경관리계획을 면밀히 검토하여, 재해로부터 안전하면서도 시민들에게 쾌적한 친수공간을 제공할 수 있는 지속 가능한 소하천 정비 지침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약식전략환경영향평가를 통해 사업 시행 시 예상되는 환경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평가 항목과 범위를 적절하게 설정하였음 - 국지성 호우 등에 대비하여 하천의 치수 안전성을 확보 및 수변 생태계 보전이 조화롭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환경보전대책을 수립하겠음 - 향후 계획 수립과정에서 소하천별 특성에 맞는 자연친화적 공법 도입과 환경관리계획을 검토하고, 재해로부터 안전하며 시민들에게 쾌적한 친수공간을 제공하는 지속 가능한 소하천 정비 지침을 계획하겠음	반영
	□ 평가항목·범위 등에 대한 검토의견		
	1. 평가대상지역의 설정 오산시 관내 15개 소하천 및 주변지역을 평가대상으로 설정하여 계획 수립에 따른 환경 영향을 직접적으로 검토할 수 있도록 범위를 설정하여야 함	오산시 관내 15개 소하천 및 주변지역을 평가대상으로 설정하여 계획 수립에 따른 환경 영향을 검토가능한 범위를 설정하였음	반영
	2. 토지이용 구상안 소하천별 지리적 특성과 주변 개발 현황을 고려하여, 치수 기능을 안정적 유지와 자연환경 보전이 조화되도록 구상안을 마련하여야 함	소하천별 지리적 특성과 주변 개발 현황을 고려하고, 치수 기능 안정유지 및 자연환경 보전이 조화되는 구상안을 계획하겠음	반영

〈표 계속〉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심의의견 및 반영결과

소 속	심의의견	반영결과	반영여부
관할 지자체	3. 대안 • 계획 비교 대안 및 공법 대안 설정을 통해 환경적 영향을 최소화하고 치수 효율성을 극대화할 수 있는 최적의 안을 도출하여야 함	• 환경적 영향을 최소화하고 치수 효율성을 극대화할 수 있는 최적의 안을 계획하겠음	반영
	4. 평가 항목·범위·방법 등 • 최근 빈번한 국지성 호우 등 기상 특성을 고려하여, 동·식물상 및 수질 항목 평가 시 하천 정비 공법에 따른 수변 생태계 영향 저감대책을 구체적으로 포함해야 함. 특히, 자연친화적 호안 공법 적용에 따른 생태적 연결성 확보 방안을 평가 방법 및 예측 시 심도 있게 다룰 것을 제안함	• 국지성 호우 등을 고려하여, 동·식물상 및 수질 항목 평가 시 수변 생태계 영향 및 저감대책을 수립하겠음 • 자연친화적 호안 공법 적용에 따른 생태적 연결성 확보 방안을 제시하겠음	반영
	5. 주민 등에 대한 의견수렴계획 • 법적 절차에 따른 공람·공고 및 설명회 개최를 통해 주민과 관계기관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고, 이를 계획 수립 과정에 충실히 반영하여야 함. • 주민들이 공람, 설명회 등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다양한 방법으로 홍보하고, 주민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요약서 등을 준비하여 충분한 정보를 제공해야 할 것임.	• 관련규정에 따른 공람·공고 및 설명회 개최를 통해 주민과 관계기관의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계획에 반영하겠음 • 주민들이 공람, 설명회 등에 참여할 수 있도록 홍보하고, 주민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요약서 등을 제공할 것임	반영
	6. 기 타 • 하천 정비 시 단순히 물리적인 치수 용량확대에만 치중하지 말고, 오산시의 생태 네트워크를 고려한 친수 공간 조성 및 지속 가능한 유지관리 계획을 병행하여 수립하여야 함. • 계획소하천 구역 인근 개인오수처리 시설 운영 등으로 인한 소하천 수질 영향을 분석하고, 소하천의 수질오염을 방지하기 위해 하수관련 부서와 협의 후, 오수관로 정비 등 구체적인 저감 방안을 수립하여 계획에 반영하여야 함	• 하천 정비 시 오산시의 생태 네트워크를 고려한 친수 공간 조성 및 지속 가능한 유지관리 계획을 병행하여 수립하겠음 • 계획 소하천 수질 분석시 인근의 개인하수처리시설에 영향이 있었는지 분석할 계획임 • 하수관련 부서 협의 및 오수관로 정비는 본 계획과 무관함	반영

〈표 계속〉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심의의견 및 반영결과

소 속	심의의견	반영결과	반영여부
관할 지자체	상기 제시된 의견을 충분히 검토하여 반영하고, 반영이 불가피한 사항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사유를 제시하기 바람	상기 제시된 의견을 검토하여 반영하고, 반영이 불가피한 사항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사유를 제시하였음	반영

〈표 계속〉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심의의견 및 반영결과

소 속	심의의견	반영결과	반영여부
협의기관	□ 총괄 의견		
	- 본 심의의견은 오산시 관내 15개 소하천 정비종합계획 재수립 전략환경영향평가의 항목·범위 등을 결정하기 위한 것으로, 이·치수 기능 및 하천의 자연성과 생태적 건강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친환경적인 하천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함 - 하천 공간환경 관리계획(지구지정)은 계획 하천에 대한 향후 관리방향 설정의 기본적인 지침이 되므로 하천 구간별 생태적인 특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설정하여 함	- 이·치수 기능 및 하천의 자연성과 생태적 건강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친환경적인 계획을 수립하겠음 - 하천 공간환경 관리계획은 계획 하천에 대한 향후 관리방향 설정의 기본적인 지침이 되므로 하천별 생태적인 특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설정하겠음	반영
	□ 항목별 결정내용에 대한 의견		
	1. 환경보전목표의 설정 • 별도의견 없음	-	-
	2.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의 설정 • 별도의견 없음	-	-
	3. 토지이용 구상안 - 하천공간 관리계획은 기수립된 하천 기본계획과 비교하여 관리계획이 변경되는 경우, 사유 등을 제시하여야 함(기 수립한 계획과 비교하여 변경 사항 등을 표와 도면으로 제시) - 유로변경 구간, 보 및 낙차공 등이 설치되어 있는 하천에 대해서는 시설 유지의 적정성을 검토하여야 함	- 하천공간 관리계획은 기수립된 기본계획과 비교하여 관리계획이 변경되는 경우, 사유 등을 제시하겠음 - 유로변경 구간은 없으며, 보 및 낙차공 등이 설치되어 있는 하천에 대해서는 시설 유지의 적정성을 검토하겠음	
	4. 대안 - 축제 등 개수계획에 대한 대안 검토 결과 및 선정 사유 등을 상세히 제시하여야 함 - 하상정비(준설)를 계획하는 경우, 하천의 수질 및 수생태계에 악영향이 예상되므로 준설 외 대안검토, 준설의 필요성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함	- 축제 등 개수계획에 대한 대안 검토 결과 및 선정 사유 등을 제시하겠음 - 하상정비를 계획하는 경우, 준설 외 대안검토, 준설의 필요성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겠음	

〈표 계속〉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심의의견 및 반영결과

소 속	심의의견	반영결과	반영여부
협의기관	5. 평가 항목·범위·방법 등 • 공사 시 관련 수계에 영향이 없도록 수질개선 및 관리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함 - 기수립된 하천기본계획과 금번 계획의 홍수량(홍수위)을 비교하여 금번 계획으로 신설 및 변경되는 시설물 설치 필요성 및 지구 지정 현황에 대한 자료 비교·제시	• 공사 시 관련 수계에 영향이 없도록 수질개선 및 관리방안을 제시하겠음 • 기수립된 계획과 금번 계획의 홍수량(홍수위)을 비교하여 신설·변경되는 시설물 설치 필요성, 지구 지정 현황 자료를 비교·제시하겠음	반영
	6. 주민 등에 대한 의견수렴계획 • 대상 지역 주민과 이해당사자 등을 대상으로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민원 등의 발생을 최소화하고, 제시된 의견은 사업계획에 적극 반영하여야 함	• 대상 지역 주민과 이해당사자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민원 발생을 최소화하고, 제시된 의견은 계획에 반영하겠음	반영
	7. 기 타(계획의 적정성 및 입지 타당성 위주로 작성) • 동 심의결과를 반영한 평가서의 세부적인 검토과정에서 추가적인 보완이 필요한 경우 기 결정된 평가항목·범위 등이 조정될 수 있음	• 심의 결과를 반영한 평가서의 추가적인 보완이 필요한 경우 기 결정된 평가항목·범위 등이 조정하겠음	반영

〈표 계속〉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심의의견 및 반영결과

소 속	심의의견	반영결과	반영여부
민간 전문가 (위원장 위촉)	☐ 총괄 의견		
	• 각 소하천과 지역의 특성 등이 종합적으로 반영되어 평가항목·범위 등이 적절하게 설정되었음	• 각 소하천과 지역의 특성 등을 반영하여 평가항목·범위 등을 설정하였음	반영
	☐ 평가항목·범위 등에 대한 검토의견		
	1. 평가대상지역의 설정 • 의견 없음	-	-
	2. 토지이용 구상안 • 의견 없음	-	-
	3. 대안 • 의견 없음	-	-
	4. 평가 항목·범위·방법 등 • 의견 없음	-	-
	5. 주민 등에 대한 의견수렴계획 • 의견 없음	-	-
	6. 기 타 • 의견 없음	-	-

〈표 계속〉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심의의견 및 반영결과

소 속	심의의견	반영결과	반영여부
민간 전문가 (협의기관 추천)	□ 총 괄 의 건		
	• 본 건은 경기도 오산시 관애에 위치한 소하천(15개소, 15.9km)에 대해 소하천정비 종합계획 수립을 위한 전략환경영향평가 준비서에 대한 검토 의견임	-	-
	□ 평가항목·범위 등에 대한 검토의견		
	1. 환경보전목표의 설정 • 단순 원칙 제시 수준의 환경보전 목표를 세부 항목별 쟁점 기반의 정량적·구체적 목표 체계로 구체화하여 보고서의 객관성과 완성도를 제고하여야 함	• 구체적인 개발계획이 수립되지 않아 정성적인 목표를 수립하였으며, 세부 항목별 환경기준을 준수할 계획임	반영
	2. 평가대상지역의 설정 • 대상지역도 단순 원칙 제시 수준으로 제시하여 구체성이 결여되었으므로 항목별로 영향지역을 설정하여야 함	• 과업구간을 제시하였으며, 항목별 평가대상지역도 제시하였음	반영
	3. 토지이용 구상안 • 금회 평가 준비서에 토지이용 구성안이 제시되어 있지 않았으므로 계획하천이 고도로 개발된 지역에 입지하고 있으므로 해당 지역의 특성을 반영할 수 있는 토지이용 구성안을 바탕으로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을 작성하여야 함	• 계획하천이 고도로 개발된 지역에 입지하고 있어 해당 지역의 특성을 반영할 수 있는 토지이용 구성안을 바탕으로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을 작성하겠음	반영
	4. 대안 • 소하천별 설계빈도가 상향 조정 될 경우 대안 검토시 기존 설계빈도와 상향될 설계빈도를 대안으로 설정하고 축제 및 보축의 규모 및 하상정비(하상준설 및 평탄화 포함여부)와 침수범위에 대한 비교가 필요함 - 계획홍수량이 결정된 이후에 기존 하상과 호안을 최대한 유지한 상태에서 제방만을 증고하는 대안을 포함한 제방 축제 및 보축 대안(하상준설 및 하상 평탄화 여부 포함) 비교 필요	• 소하천별 설계빈도가 상향 조정 될 경우, 기존 설계빈도와 상향될 설계빈도를 대안으로 설정하고 축제 및 보축의 규모 및 하상정비와 침수범위에 대한 비교를 하겠음 - 계획홍수량이 결정된 이후에 기존 하상과 호안을 최대한 유지한 상태에서 제방만을 증고하는 대안을 포함한 제방 축제 및 보축 대안을 비교하겠음	반영

〈표 계속〉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심의의견 및 반영결과

소 속	심의의견	반영결과	반영여부
민간 전문가 (협의기관 추천)	5. 평가 항목·범위·방법 등 • 동·식물상 - 법정보호종을 포함한 동·식물 서식 및 분포현황 파악은 계획하천의 현황 파악에 중요한 사항이므로 이에 대한 면밀한 조사가 필요함 • 수질 및 수리·수문 - 축제 및 보축 등 정비계획이 수립된 구간에 대해서는 지구별로 지구개요, 현황 및 특징(현황사진 포함), 침수범위 및 침수범위 내 토지이용현황, 축제 및 보축 관련 평면도 및 횡단면도 등 관련자료 제시 - 소하천 횡단시설물과 관련하여 구체적인 자료를 제시하고 시설물의 관리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필요함 - 수질 현황을 파악하고 관련된 수질 관리계획과 연계하여 계획하천의 목표수질을 설정하고 수질보전 및 관리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함 • 환경친화적 토지이용 - 토지이용현황은 하천 주변(침수범위 내)의 토지에 대한 토지이용 현황을 중점적으로 조사하고 이를 통해 하천공간관리계획 및 하천설계빈도설정의 적정성을 검토하는 것이 필요함 - 특히 고밀도 개발된 지역의 현황을 바탕으로 친수지구 지정을 검토하여야 함	• 계획하천의 법정보호종을 포함한 동·식물 서식 및 분포현황을 면밀히 조사하겠음 • 축제 및 보축 등 정비계획이 수립된 구간에 대해서는 지구별로 지구개요, 현황 및 특징, 침수범위 및 침수범위 내 토지이용현황, 축제 및 보축 관련 평면도 및 횡단면도 등 관련자료 제시하겠음 • 소하천 횡단시설물과 관련하여 구체적인 자료를 제시하고 시설물의 관리계획을 수립하겠음 • 수질 현황을 파악하고 관련된 수질관리계획과 연계하여 계획하천의 목표수질을 설정하고 수질보전 및 관리방안을 수립하겠음 • 토지이용현황은 하천 주변의 토지에 대한 토지이용 현황을 중점적으로 조사하고 이를 통해 하천공간관리계획 및 하천설계빈도설정의 적정성을 검토하겠음 • 고밀도 개발된 지역의 현황을 바탕으로 친수지구 지정을 검토하겠음	반영
	6. 주민 등에 대한 의견수렴계획 • 주민의견 수렴 이외에도 탐문조사 등을 통해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 등의 수해 경험(침수 빈도, 범위, 피해정도 등)과 법정보호종의 서식현황 등 관련된 의견을 청취하여 사업계획 수립에 참조하는 것이 필요함	• 탐문조사 등을 통해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등의 수해 경험과 법정보호종의 서식현황 등 관련된 의견을 청취하여 사업계획 수립에 참조하겠음	반영
	7. 기 타 • 특이사항 없음	-	-

<표 계속>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심의의견 및 반영결과

소 속	심의의견	반영결과	반영여부
주민대표	□ 총 괄 의 건		
	• 재수립에 적극협조할것이며 환경영향 평가협의회 의원 선정 위촉에 최선의 노력에 임하겠습니다.	• 주민의견을 수렴 및 반영하 여 친환경적인 계획을 수립 하겠음	반영
	□ 평가항목·범위 등에 대한 검토의견		
	1. 평가대상지역의 설정 • 의견 없음	-	-
	2. 토지이용 구상안 • 의견 없음	-	-
	3. 대안 • 의견 없음	-	-
	4. 평가 항목·범위·방법 등 • 의견 없음	-	-
	5. 주민 등에 대한 의견수렴계획 • 의견 없음	-	-
	6. 기 타 • 의견 없음	- -	- -

〈표 계속〉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심의의견 및 반영결과

소 속	심의의견	반영결과	반영여부
민간 전문가 (시민단체 추천)	□ 총 괄 의 건		
	본 계획은 기후환경영향평가 대상은 아니나 기후변화에 따른 하천관리 취약성 대응 등을 위한 하천 개수계획 수립시, 하천 환경이 양호한 구간에 대해서는 그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는 대안을 검토하여야 함	기후변화에 따른 하천관리 취약성 대응 등을 위한 하천 개수계획 수립시, 하천 환경이 양호한 구간에 대해서는 그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는 대안을 검토하겠음	반영
	□ 평가항목·범위 등에 대한 검토의견		
	1. 평가대상지역의 설정 - 계획하천의 수계에 대해 홍수관리구역이나 자연재해위험 개선지구 등이 지정되었는지를 확인하고 지정된 경우, 이를 감안하여 평가대상지역을 설정하여야 함 - 해당 계획 및 인근지역의 이상기후 및 자연재해 현황을 확인하여야 함 - 기 제시한 생태·자연도 이외에 국토환경성평가지도, 도시생태현황지도, 철새도래지, 식생보전등급 등을 각 소하천별로 식별이 가능한 도면으로 제시하고 지정된 경우, 이를 평가대상지역 설정에 감안하여야 함	- 계획하천의 수계에 대해 홍수관리구역이나 자연재해위험 개선지구 등이 지정여부를 확인하고 평가대상지역을 설정하겠음 - 해당 계획 및 인근지역의 이상기후 및 자연재해 현황을 확인하겠음 - 국토환경성평가지도, 도시생태현황지도, 철새도래지, 식생보전등급 등을 각 소하천별로 식별이 가능한 도면으로 제시하고 감안하겠음	반영
	2. 토지이용 구상안 의견 없음	-	-
	3. 대안 도심구간 소하천의 재해빈도가 높아짐에 따라 홍수량 산정방법에 대한 추가 대안 검토가 요구됨	홍수량 산정방법에 대한 추가 대안 검토를 하겠음	반영
	4. 평가 항목·범위·방법 등 - 평가범위 및 방법의 설정 시, 생물다양성·서식지 보전에 대한 범위와 평가방법을 제시하여야 하며 평가대상범위 제시 시, 분류군별 평가범위를 정량적으로 설정하여야 함 - 동·식물상 조사는 조사시기 및 횟수에 따른 한계가 있으므로 탐문조사 시 2인 이상을 실시하고 민간단체 학술자료 등 다양한 지역자료를 적극 참조하여 조사의 신뢰도를 높여야 함	- 생물다양성·서식지 보전에 대한 범위와 평가방법을 제시하였고 평가범위를 설정하였음 - 탐문조사 시 2인 이상을 실시하고 민간단체 학술자료 등 다양한 문헌자료를 참조하겠음	반영

〈표 계속〉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심의의견 및 반영결과

소 속	심의의견	반영결과	반영여부
민간 전문가 (시민단체 추천)	• 종·횡적 하천시설물 등 기존시설물 등 기존 시설물 현황과 정비계획을 명확히 제시하고 사업시행시 현장여건에 적합한 친환경 공법을 적용하여야 함	• 기존 시설물 현황과 정비계획을 명확히 제시하고 사업시행시 현장여건에 적합한 친환경 공법을 적용하겠음	반영
	5. 주민 등에 대한 의견수렴계획 • 의견 없음	-	-
	6. 기 타 • 본 심의의견 등을 충실히 반영하여 전략환경영향평가서를 작성하고 평가서의 세부적인 검토과정에서 해당 사업으로 인한 불가피한 환경영향을 검토하기 위하여 추가적인 보완이 필요한 경우, 기 결정된 평가항목 범위가 조정될 수 있음 •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작성 시 동 심의의견의 반영 여부를 제시하고 반영이 불가피한 사항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사유를 제시하여야 함	• 본 심의의견 등을 반영하여 전략환경영향평가서를 작성하며 추가적인 보완이 필요한 경우, 기 결정된 평가항목 범위 등을 조정하겠음 •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작성 시 동 심의의견의 반영 여부를 제시하고 반영이 불가피한 사항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사유를 제시하겠음	반영

전략환경영향평가 평가준비서에 대한 검토의견
(사업명 : 2025년 소하천정비종합계획 제수립)

□ 총괄의견

- 소하천정비종합계획(제수립) 전략환경영향평가는 홍수 등 자연재해 예방, 치수 안정성 확보, 자연친화적 하천정비를 통해 수생태계의 보전 및 소하천의 체계적인 관리·정비를 도모하는 방향으로 계획을 추진하여야 함.

□ 평가항목·범위 등에 대한 검토의견

1. 평가대상지역의 설정

- 오산시 소하천 특성 및 여건에 따라 기준을 마련하여야 하며, 하천기본계획, 현장조사, 문헌조사 등을 반영하여 방할을 설정 하여야 함. 또한, 도시계획, 산림 및 공원, 하수관로 등 소하천 인근 지역을 관리하는 부서의 의견을 수렴하여 계획을 수립하여야 함.
- 공사시 발생하는 소음·진동 평가 대상지역 범위는 소하천 인근 정온시설 현황 등을 고려하여 설정하기 바람.

2. 토지이용 구상안

- 소하천 인근 지역의 공원, 녹지 등이 하천과 연결되도록 하고, 지형 변화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계획을 수립하여야 함.

3. 대안

- 하천 정비로 인한 생태계 훼손을 방지하기 위하여, 복원계획 설정 등 환경친화적 대안을 제시하여 계획에 반영하기 바람.
- 소하천 정비 시 일률적인 호안공법 적용을 지양하고, 각 소하천의 수리수문 특성, 생태적 가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적정 공법을 대안으로 제시하여야 함.
 - 급경사 및 유속이 큰 구간은 구조적 안정성을 확보하고, 완경사 구간은 식생호안 등 자연형 호안공법을 우선 검토.
 - 호안공법의 식물 도입 시 생태교란종 및 외래종을 지양하고, 하천 생태계에 적합한 식생을 계획하여야 함.

4. 평가 항목·범위·방법 등

- 자연환경의 보전
 - 하천별 주요 지점을 지정하여 문헌조사 및 현장조사를 기반으로 범종보호종, 멸종위기종 등 주요 보호대상 동·식물에 대한 보호대책을 수립하여야 함.
 - 오산시의 소하천은 전형적인 도시형 하천으로, 집중호우 시 수위 상승이 급격한 특성을 보이므로, 수리수문 및 하천주변 지형 현황 등을 명확히 파악하여, 하천이 범람되지 않도록 계획을 수립하여야 함.
- 생활환경의 안정성
 - 공사 시 발생하는 토사유출 등 수질오염물질 발생으로 인한 영향을 예측하고, 이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마련하여야 함. 또한, 공사 시 주변 정온시설에 대한 소음·진동으로 인한 피해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저감 방안을 마련하여야 함.

5. 주민 등에 대한 의견수렴계획

-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주민 등의 의견 수렴 절차를 이행하고, 대상지역 주민들에게 적극적으로 홍보하여 수렴한 의견은 계획에 적극 반영하여야 함.

6. 기 타

- 의견 없음.

□ 최종 평가협의회 심의·의결 방법 : 대면심의(), 서면심의(○)

2026. 4.

심의위원 : 오산시 환경사업소장

- 2 -

전략환경영향평가 평가준비서에 대한 검토의견
(사업명 : 2025년 소하천정비종합계획 제수립)

□ 총괄의견

- 소하천정비종합계획(제수립)에 따른 15개소 소하천에 대한 배수구역, 강우, 유량 등에 관한 제반사항 및 주변 환경 등을 고려하여 하천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적정 저감방안을 강구하여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 하하여야 함.

□ 평가항목·범위 등에 대한 검토의견

1. 평가대상지역의 설정 : 의견없음(), 수정의견(○)

- 대상지역을 설정할 경우 설정사유(사업구역 경제설계 사유 포함)를 상세히 명기하고, 환경영향의 예측·분석에 사용된 기법, 내용 등 관련자료 명시 및 사용근거 등 타당성을 객관적으로 제시하여야 함.
- 사업개요, 기본계획(안), 상위계획 및 관련계획과의 부합여부, 해당하천의 현황사진, 생태자원도, 국토환경성평가지도, 지형도(표고 및 경사 분석 자료 포함) 등을 제시
- 동·식물상 평가대상지역 범위는 분류군에 따른 특성 및 생태계연결성 등을 고려하여 설정

2. 토지이용 구상안 : 의견없음(), 수정의견(○)

- 집중호우 등 재해예방, 제네지 및 자연호안 등의 토지이용을 고려할 것.
- 구간별 하천상태 현황을 토대로 구체적인 보전·관리계획 수립하여야 함.
- 유로를 변경하는 경우 변경사유, 유로 변경 구간에 대한 구체적인 자료 제시

3. 대안 : 의견없음(), 수정의견(○)

- 항목별 저감방안은 여러 가지 대안을 제시하여 각 대안의 장단점을 비교 분석한 후 최종적으로 이행할 대안과 그 선정사유를 명시하여야 함.

4. 평가 항목·범위·방법 등 : 의견없음(), 수정의견(○)

- 계획의 작성성
 - 상위계획 및 관련 계획과의 연계성을 검토하여 계획 하천과의 직·간접적으로 연계된 지역에 대해서는 관련 내용 및 사실물계획 연계성을 검토 제시

○ 생물다양성·서식지 보전

- 동·식물상 조사 시 하천 구간별로 문헌조사, 탐문조사 및 현지조사 등을 통해 사업지역 및 인접 지역의 법정보호종 서식현황 제시, 영향예측 및 저감방안 제시
- 주변 자연경관에 미치는 영향
 - 사업시행 시 주요 조망점에서의 경관 훼손여부를 검토하고 사업시행 전·후 경관 변화를 비교 예측하여 저감방안을 수립
- 수환경의 보전
 - 치수적 안전성과 하천 생태계가 조화를 이룰수 있도록 사업계획 수립
 - 하천의 통수단면의 확보 등의 이·치수적인 측면에서 검토를 통한 수리 영향을 예측하고, 계획홍수위 및 하상고 등을 비교할 수 있는 종단면도 제시
 - 계획범면도상에 하천구역(기준 및 변경 구분), 축조 및 인공시설물 설치 등의 하천계획을 모두 포함하여 제시
 - 사업지구 인근의 농경지, 공장, 축사, 주거지 등에서 발생하는 점·비점오염 물질의 하천 유입 차단방안 검토·제시
- 친환경적 홍수방어 대안 검토
 - 하천의 자연성을 저하시키는 확폭, 제방 및 하도정비 등의 구조물 설치 위주 계획을 지양

5. 주민 등에 대한 의견수렴계획 : 의견없음(), 수정의견(○)

-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 주민들이 공람 및 설명회 등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다양한 방법을 활용하여 관련사항을 적극 홍보하여야 하며, 주민설명회 또는 공청회 등 사업에 따른 환경적인 영향 등에 대하여 상세히 설명하고 이에 대한 주민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해야 함.

6. 기 타

- 금회 계획에 반영(산설, 제가설 등)된 개수계획에 대해서 사업의 필요성 등을 기수립 계획과 비교·검토하여 제시하여야 함.
- 동 심의 결과를 반영·작성한 평가서의 세부적인 검토과정에 해당계획으로 인한 불가피한 환경영향을 충실히 검토하기 위하여 추가적인 보완이 필요한 경우 기 결정된 평가 항목·범위 등이 조정될수 있음을 감안하여야 함.
- 전략환경영향평가서는 환경영향평가서 작성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작성하여야 함.

□ 최종 평가협의회 심의·의결 방법 : 대면심의(), 서면심의(○)

2026. 04. 14.

심의위원 :

- 2 -

전략환경영향평가 평가준비서에 대한 검토의견 (사업명 : 2025년 소하천정비종합계획 재수립) □ 총괄의견 ○ 본 계획은 「소하천정비법」에 따라 오산시 관내 15개 소하천의 체계적인 정비 및 관리 지침을 마련하는 법적 계획임. 기 수립된 종합계획의 타당성을 재검토하고 변화된 하천 여건을 반영하려는 취지는 적절하며, 약식전략 환경영향평가를 통해 사업 시행 시 예상되는 환경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평가 항목과 범위를 적절하게 설정할 필요가 있음. ○ 최근 기상이변에 따른 국지성 호우 등에 대비하여 하천의 치수 안전성을 확보함과 동시에, 수변 생태계 보전이 조화롭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구체적인 환경 저감 방안 마련이 필요함. 향후 계획 수립 과정에서 소하천별 특성에 맞는 자연친화적 공법 도입과 환경관리계획을 면밀히 검토하여, 제재로부터 안전하면서도 시민들에게 쾌적한 친수 공간을 제공할 수 있는 지속 가능한 소하천 정비 지침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평가항목·범위 등에 대한 검토의견 1. 평가대상지역의 설정 ○ 오산시 관내 15개 소하천 및 주변 지역을 평가대상지역으로 설정하여 계획 수립에 따른 환경 영향을 직접적으로 검토할 수 있도록 범위를 설정하여야 함. 2. 토지이용 구상안 ○ 소하천별 지리적 특성과 주변 개발 현황을 고려하여, 치수 기능의 안정적 유지와 자연환경 보전이 조화되도록 구상안을 마련하여야 함. 3. 대안 ○ 계획 비교 대안 및 공법 대안 설정을 통해 환경적 영향을 최소화하고 치수 효율성을 극대화할 수 있는 최적의 안을 도출하여야 함.	4. 평가 항목·범위·방법 등 ○ 최근 빈번한 국지성 호우 등 기상 특성을 고려하여, 동·식물상 및 수질 항목 평가 시 하천 정비 공법에 따른 수변 생태계 영향 저감 대책을 구체적으로 포함해야 함. 특히, 자연 친화적 호안 공법 적용에 따른 생태적 연결성 확보 방안을 평가 방법 및 예측 시 심도 있게 다룰 것을 제안함. 5. 주민 등에 대한 의견수렴계획 ○ 법적 절차에 따른 공람·공고 및 설명회 개최를 통해 주민과 관계기관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고, 이를 계획 수립 과정에 충실히 반영하여야 함. ○ 주민들이 공람, 설명회 등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다양한 방법으로 홍보하고, 주민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요약서 등을 준비하여 충분한 정보를 제공해야 할 것임. 6. 기 타 ○ 하천 정비 시 단순히 물리적인 치수 용량 확대에만 치중하지 말고, 오산시의 생태 네트워크를 고려한 친수 공간 조성 및 지속 가능한 유지관리 계획을 병행하여 수립하여야 함. ○ 계획 소하천 구역 인근 개인오수처리시설 운영 등으로 인한 소하천 수질 영향을 분석하고, 소하천의 수질오염을 방지하기 위해 하수관련 부서와 협의 후, 오수관로 정비 등 구체적인 저감방안을 수립하여 계획에 반영하여야 함. ○ 상기 제시된 의견을 충분히 검토하여 반영하고, 반영회 불가피한 사항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사유를 제시하기 바람. □ 최종 평가협의회 심의·의결 방법 : 대면심의(), 서면심의(☒) 2026. 4. 15. 심의위원 :
- 2 -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심의결과 통보서 (오산시 소하천정비종합계획 재수립) □ 총괄의견 ○ 본 심의의결은 오산시 관내 15개 소하천정비종합계획 재수립 전략환경영향평가의 항목·범위 등을 결정하기 위한 것으로, 이·치수 기능 및 하천의 자연성과 생태적 건강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친환경적인 하천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함. ○ 하천 공간환경 관리계획(지구지정)은 계획 하천에 대한 향후 관리방향 설정의 기본적인 지침이 되므로 하천 구간별 생태적인 특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설정하여야 함. □ 항목별 결정내용에 대한 의견 1. 환경보전목표의 설정 ○ 별도 의견 없음 2.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의 설정 ○ 별도 의견 없음 3. 토지이용 구상안 ○ 하천공간 관리계획은 기수립된 하천기본계획과 비교하여 관리계획이 변경되는 경우 사유 등을 제시하여야 함(기 수립한 계획과 비교하여 변경사항 등을 표와 도면으로 제시). ○ 유로변경 구간, 브 및 낙차공 등이 설치되어 있는 하천에 대해서는 사실 유지의 적정성을 검토하여야 함. 4. 대안 ○ 축제 등 개수계획에 대한 대안 검토 결과 및 선정 사유 등을 상세히 제시하여야 함. ○ 하상정비(준설)를 계획하는 경우, 하천의 수질 및 수생태계에 악영향이 예상되므로 준설 외 대안 검토, 준설의 필요성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함. 5. 평가 항목·범위·방법 등 ○ 공사 시 관련 수계에 영향이 없도록 수질개선 및 관리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함. - 기수립된 하천기본계획과 금년 계획의 홍수량(홍수위)을 비교하여 금년 계획으로 신설 및 변경되는 시설을 설치 필요성 및 지구 지경 현황에 대한 자료 비교·제시 - 전체 하천에 대한 축제, 보축 및 호안 관련 축점별 표시, 횡단면도 및 개수구간 표준 단면도 등 관련 자료를 도면으로 제시 6. 주민 등에 대한 의견수렴계획 ○ 대상 지역 주민과 이해당사자 등을 대상으로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민원 등의 발생을 최소화하고, 제시된 의견은 사업계획에 적극 반영하여야 함. 7. 기 타(계획의 적정성 및 입지 타당성 위주로 작성) ○ 동 심의결과를 반영한 평가서의 세부적인 검토과정에 추가적인 보완이 필요한 경우 기 결정된 평가항목·범위 등이 조정될 수 있음.	전략환경영향평가 평가준비서에 대한 검토의견 (사업명 : 2025년 소하천정비종합계획 재수립) □ 총괄의견 ○ 각 소하천과 지역의 특성 등이 종합적으로 반영되어 평가항목·범위 등이 적절하게 설정되었음. □ 평가항목·범위 등에 대한 검토의견 1. 평가대상지역의 설정 : 의견없음(☒), 수정의견() ○ 2. 토지이용 구상안 : 의견없음(☒), 수정의견() ○ 3. 대안 : 의견없음(☒), 수정의견() ○ 4. 평가 항목·범위·방법 등 : 의견없음(☒), 수정의견() ○ 5. 주민 등에 대한 의견수렴계획 : 의견없음(☒), 수정의견() ○ 6. 기 타 ○ □ 최종 평가협의회 심의·의결 방법 : 대면심의(), 서면심의(☒) 2026. 4. 15. 심의위원 :

전략환경영향평가 평가준비서에 대한 검토의견

(사업명 : 2025년 오산시 소하천정비종합계획 제수립)

□ 총괄의견

- 본 건은 경기도 오산시 관내에 위치한 소하천(15개소, 15.9km)에 대해 소하천정비 종합계획 수립을 위한 전략환경영향평가 준비서에 대한 검토의견임

□ 평가항목·범위 등에 대한 검토의견

1. 환경보전 목표의 설정 : 의견없음(), 수정의견(✓)
 - 단순 원칙 제시 수준의 환경보전 목표를 세부 항목별 경쟁 기반의 정량적·구체적 목표 체계로 구체화하여 보고서의 객관성과 완성도를 제고하여야 함
2. 평가대상지역의 설정 : 의견없음(), 수정의견(✓)
 - 대상지역도 단순 원칙 제시 수준으로 제시하여 구체성이 결여되었으므로 항목별로 영향지역을 설정하여야 함
3. 토지이용 구상안 : 의견없음(), 수정의견(✓)
 - 급의 평가 준비서에 토지이용 구상안이 제시되어 있지 않으므로 계획 하천이 고도로 개발된 지역에 입지하고 있으므로 해당 지역의 특성을 반영할 수 있는 토지이용 구상안을 바탕으로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조안을 작성하여야 함
4. 대안 : 의견없음(), 수정의견(✓)
 - 소하천별 설계빈도가 상향 조정 될 경우 대안 검토시 기존 설계빈도와 상향될 설계빈도를 대안으로 설정하고 축제 및 보축의 규모 및 하상정비(하상준설 및 평탄화 포함여부)와 침수범위에 대한 비교가 필요함
 - 계획홍수량이 결정된 이후에는 기존 하상과 호안을 최대한 유지한 상태에서 제방만을 증고하는 대안을 포함한 제방 축제 및 보축 대안(하상준설 및 하상 평탄화 여부 포함) 비교 필요
5. 평가 항목·범위·방법 등 : 의견없음(), 수정의견(✓)
 - 등·식물상
 - 법정보호종을 포함한 등·식물 서식 및 분포현황 파악은 계획하천의 현황 파악에 중요한 사항이므로 이에 대한 면밀한 조사가 필요함

○ 수질 및 수리·수문

- 축제 및 보축 등 정비계획이 수립된 구간에 대해서는 지구별로 지구개요, 현황 및 특징(현황사진 포함), 침수범위 및 침수범위 내 토지이용 현황, 축제 및 보축 관련 평면도 및 횡단면도 등 관련자료 제시
- 소하천 횡단시설물과 관련하여 구체적인 자료를 제시하고 시설물의 관리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필요함
- 수질 현황을 파악하고 관련된 수질관리계획과 연계하여 계획하천의 목표수질을 설정하고 수질보전 및 관리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함

○ 환경친화적 토지이용

- 토지이용현황은 하천 주변(침수범위 내)의 토지에 대한 토지이용 현황을 중점적으로 조사하고 이를 통해 하천공간관리계획 및 하천설계빈도 설정의 적정성을 검토하는 것이 필요함
- 특히 고밀도 개발된 지역의 현황을 바탕으로 친수지구 지정을 검토하여야 함

6. 주민 등에 대한 의견수렴계획 : 의견없음(), 수정의견(✓)

- 주민의견 수렴 이외에도 탐문조사 등을 통해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 등의 수해 경험(침수 빈도, 범위, 피해경도 등)과 범정부호종의 서식현황 등 관련된 의견을 청취하여 사업계획 수립에 참조하는 것이 필요함

7. 기 타

- 특이사항 없음

□ 최종 평가협의회 심의·의결 방법 : 대면심의(), 서면심의(✓)

2026. 4. 6.

심의위원

- 2 -

전략환경영향평가 평가준비서에 대한 검토의견

(사업명 : 2025년 소하천정비종합계획 제수립)

□ 총괄의견

- 계획상의 환경영향평가 대상은 아니나 기후변화에 따른 하천관리 취약성 대응 등을 위한 하천 개수계획 수립시, 하천 환경이 양호한 구간에 대해서는 그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는 대안을 검토하여야 함

□ 평가항목·범위 등에 대한 검토의견

1. 평가대상지역의 설정 : 의견없음(✓), 수정의견()
 -
2. 토지이용 구상안 : 의견없음(✓), 수정의견()
 -
3. 대안 : 의견없음(✓), 수정의견()
 -
4. 평가 항목·범위·방법 등 : 의견없음(✓), 수정의견()
 -
5. 주민 등에 대한 의견수렴계획 : 의견없음(✓), 수정의견()
 -
6. 기 타
 -

□ 최종 평가협의회 심의·의결 방법 : 대면심의(), 서면심의(✓)

2026. 4. 6.

심의위원

전략환경영향평가 평가준비서에 대한 검토의견

(사업명 : 2025년 소하천정비종합계획 제수립)

□ 총괄의견

- 본 계획은 기후환경영향평가 대상은 아니나 기후변화에 따른 하천관리 취약성 대응 등을 위한 하천 개수계획 수립시, 하천 환경이 양호한 구간에 대해서는 그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는 대안을 검토하여야 함

□ 평가항목·범위 등에 대한 검토의견

1. 평가대상지역의 설정 : 의견없음(), 수정의견(✓)
 - 계획하천의 수계에 대해 홍수관리구역이나 자연재해위험 개선지구 등이 지정되었는지를 확인하고 지정된 경우, 이를 감안하여 평가대상지역을 설정하여야 함
 - 해당 계획 및 인근지역의 이상기후 및 자연재해 현황을 확인하여야 함
 - 기 제시한 상태·자연도 이외에 국토환경성평가지도, 도시생태환경지도, 질 세도래지, 식생보전등급 등을 각 소하천별로 식별이 가능한 도면으로 제시하고 지정된 경우, 이를 평가대상지역 설정에 감안하여야 함
2. 토지이용 구상안 : 의견없음(✓), 수정의견()
 - 의견없음
3. 대안 : 의견없음(), 수정의견(✓)
 - 도심구간 소하천의 제방빈도가 높아짐에 따라 홍수량 산정방법에 대한 추가 대안 검토가 요구됨
4. 평가 항목·범위·방법 등 : 의견없음(), 수정의견(✓)
 - 평가범위 및 방법의 설정 시, 생물다양성·서식지 보전에 대한 범위와 평가 방법을 제시하여야 하며 평가대상범위 제시 시, 분류군별 평가범위를 정량적으로 설정하여야 함
 - 등·식물상 조사는 조사시기 및 횟수에 따른 한계가 있으므로 탐문조사 시 2인 이상을 실시하고 민간단체 학술자료 등 다양한 지역자료를 적극 참조하여 조사의 신뢰도를 높여야 함
 - 종·획적 하천시설물 등 기존 시설물 현황과 정비계획을 명확히 제시하고 사업시행시 현장여건에 적합한 친환경 공법을 적용하여야 함

(뒷장 계속)

5. 주민 등에 대한 의견수렴계획 : 의견없음(✓), 수정의견() ○ 의견없음 6. 기 타 ○ 본 심의의견 등을 충실히 반영하여 전략환경영향평가서를 작성하고 평가서의 세부적인 검토과정에서 해당 사업으로 인한 불가피한 환경영향을 검토하기 위하여 추가적인 보완이 필요한 경우, 기 결정된 평가항목 범위 등이 조정될 수 있음 ○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작성 시 본 심의의견의 반영 여부를 제시하고 반영이 불가피한 사항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사유를 제시하여야 함 ☐ 최종 평가협의회 심의·의결 방법 : 대면심의(), 서면심의(✓) 2026. 04. 13 . 심의위원 : 	
--	--